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간사

정부는 2013년 6월 ‘신통상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한-중 FTA를 비롯한 총 6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총 52개국과 15개의 FTA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무역 10대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중국, EU 등 세계 3대 거대경제권과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태 지역 경제통합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수출과 관련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신흥국 경기침체, 저유가 및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세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계 각 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TBT),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반덤핑제도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구성하고, 관세부처, 재외공관, 업종별협단체 등이 함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기업이 해외의 비관세조치로 인한 애로 사항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 전문포털(www.ntb-portal.or.kr)을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시 신속한 현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국내 7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반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의 통상제도 및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외교부와 공동으로 무역장벽 보고서(제1권) 및 분야별·국가별 통상환경보고서(제2권~6권)로 구성된 총 6권의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주요국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실질적 애로로 느끼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수집하여 2013년부터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우리 기업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여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KOTRA, 무역협회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목차 | Contents

1. 무역장벽 보고서 •

2. 분야별 통상환경

3. 아시아 · 대양주

4. 아메리카

5. 유럽

6. 아프리카 · 중동

미국	2
EU	12
일본	23
중국	30
인도네시아	53
베트남	66
말레이시아	78
인도	87
러시아	101
호주	107
브라질	112
캐나다	122

무역장벽 보고서

미국 EU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러시아 호주 브라질 캐나다

1

미국

미국은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최대 상품 교역국이었으나, 2004년부터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면서 제2대~제4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제2대 교역국으로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상품수출입은 각각 703억 달러, 453억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3%, 8.6%이며, 무역수지는 2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MTI 2단위 기준)은 수송기계(34.1%), 산업용전자제품(15.4%), 철강제품(8.3%), 전자부품(5.4%)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10.8%), 전자부품(9.9%), 정밀화학제품(9.1%), 수송기계(8.6%) 등이다.

1962~2015년간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59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액에서 24%를 차지한다. 2015년 현재(누적액 기준) 미국은 EU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의 대한국 주요 투자 업종은 최근 5년 기준 부동산·임대(27.2%), 비즈니스서비스(16.7%), 운송용 기계(11.7%), 전기·전자(7.7%) 등으로 서비스업 투자가 전체의 64.8%를 차지한다. 한편 1968~2015년 상반기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국 투자는 596억 달러로 우리나라 최대의 FDI 대상국(우리나라 전체 FDI 금액에서 20.4% 차지)이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22%), 도·소매업(20.6%), 광업(17.1%), 부동산 및 임대업(10%) 등이다.

한·미 FTA는 2007년 4월 타결된 후 2010년 12월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고,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성분 규정

미국은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어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의 수를 여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 하원에 의해 2014년 7월 28일 통과된 자외선 차단제 혁신법(Sunscreen Innovation Act)은 2014년 9월 미국 상원 통과 후,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최종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검토가 중단된 8개의 US FDA 자외선차단제 성분에 대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한 후 승인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운 자외선 차단제 함유성분들의 심사 절차가 간소화 되고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FDA 승인절차가 약 18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향후 미국 소비자의 피부암 등 각종 자외선 관련 질환이 둔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제한적 규제로 인해 한국 업체는 미국수출을 위해 제품개발 이원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미국 FDA에 사전승인을 위한 시간 및 비용 등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등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측에 화장품 규제수준이 타국 조치보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를 요구함과 동시에 자외선 차단제와 눈가용 화장품 성분을 국제적 평균에 맞추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EPS) 시험기준 개정

미국이 2012년 4월 WTO에 통보한 에너지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에 따른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는 외부전원공급장치(External Power Supplies) 및 배터리 충전기의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휴대폰, 노트북, MP3 플레이어, 장난감, 진공청소기, 면도기 등 일반·산업·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외부전원공급장치(EPS) 및 배터리 충전기에 대하여 외장형 전원장치의 최저효율, 무부하 상태의 대기전력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 충전기 종류별 최대 연간 에너지 소비량 기준치를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에너지부(DOE)가 고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미 연방 무역위원회(FTC)에서 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1월 WTO TBT 위원회 개최 당시 양자협의를 통해 EU의 규제와 미국의 에너지스타(Energystar) 보다 과도한 동작 모드 시 최저 에너지 효율, 무부하 최대전력 소모기준을 EU 혹은 에너지스타 기준으로 조정하여 줄 것과 배터리 충전기 규정의 대상제품 및 에너지소비 계산식도 동일하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개정된 시험기준의 시행일이 2014년 4월이나, 외부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에너지 효율기준은 201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답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시간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으나, 동 기준의 시행 이후에도 무역장벽 요소가 존재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LED 램프 성능 규제

2012년 4월 미국은 에너지 관리법(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에 따라 실시하는 미 연방무역위원회(FTC) 라벨링(Lighting Facts) 제도 시행을 위해 LED 램프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WTO에 통보하였다.

FTC의 라벨링 규정은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소비전력 등에 라벨을 부착하여 소비자의 고효율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며, 강제 사항으로서 최소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2015년 3월 WTO TBT 위원회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램프 수명 표기방법 및 색온도 표시값을 미국의 에너지스타 표준과 일치시켜줄 것과 규제 시행시기를 동 규정 발표 후 1년 이후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에너지스타는 높은 에너지효율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 규정은 최소 규정을 다루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미국 관계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美 FDA, 식품안전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발표

2015년 9월 및 11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11년 통과된 식품 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 따른 총 5개의 새로운 식품안전 규정들을 발표하였다. 5개 최종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 관리, 동물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위해 기반 예방관리, 해외공급자 검증 프로그램,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의 승인, 농산물 안전 기준이다. 이는 FDA가 FSMA에 의거해 당초 제안한 7가지의 식품안전 규제 변경안 중 5개를 확정환



것으로, 2016년에 나머지 2가지 최종규정(식품 및 사료의 위생적 운송, 식품에 의도적인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보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규제 변경안에 따라 식품 및 동물 사료 업체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식품안전 계획서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이 최종 규정들에 따르면, 수입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 규정을 준수함을 검증하여야 하며, FDA는 식품 및 사료를 제조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감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발행할 제3자 감사·인증 기관을 승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장도 농산물에 대해 과학에 기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FDA는 2016년 내 나머지 2개의 식품안전 규정을 발효할 예정이며, 향후 대(對)미 식품 수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규제

29종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사용규칙(SNURs) 적용 방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12월 4일 기존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NM) 대상이던 29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라 중요신규 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s)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SNURs에 따라 중요신규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또는 가공하려는 자는 활동 시작 전 최소 90일 이전에 EPA에 신고해야 한다. EPA는 사전신고를 통해 의도된 사용목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전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¹ 동 규정은 2016년 2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1_ 구체적 적용대상 물질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지원시스템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미국은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1위는 인도) 반덤핑 조사 개시 및 반덤핑 조치 부과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중국, 일본,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2015년 11월 기준 총 14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폴리에스터 단섬유,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변압기, 세탁기 등 4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이 모두 철강 제품군에 대한 것일 정도로 미국의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철강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철강재 수출 상품은 각종 강관, 강판, 코일, 강철 선, 강철 못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2015년 11월 기준 내식강, 용접강관,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4건에 대한 조사에 모두 포함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합리성은 높은 편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대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미국 철강업계가 주요 철강제품군에 대해 차례로 덤핑조사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신청행위 자체는 절차상 적법한 권리 행사임) 우리나라 수출기업으로서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4년 7월 11일 미국 상무부(DOC)는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시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중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내수가격과 비교 가능한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²을 기준으로 덤핑율을 산정하였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시에는 우리 기업 이윤율을 반영해 구성 가격을 산정했으나, 최종 판정시에는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³을 반영해 구성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고율의 덤핑율이 산정되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을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지속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 우리 수출 기업들은 항변기회 없이 기타업체로 분류돼 12.82%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2013년 대미 수출실적(894천 톤, 8.17억 달러)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납부해야하는 연간 관세는 약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연례재심 조사에도 매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 등에 있어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리 분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2월 22일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하였다. 유정용 강관 사안은 현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상황이며, 2015년 7월 1일 한미 양국간 패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절차가 진행중이다.

2. 구성가격(CV) = 제자원가(COM) + 판매관리비(SG&A) + 이윤(Profit)

3.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시에 적정이윤율로 다국적기업인 Tenaris社의 이윤율(26.11%)을 적용하였다.

유정용 장관 분쟁 외에도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세탁기 관련 분쟁이 있다. 세탁기 사건의 경우 미국이 표적덤핑⁴ 조사에서 제로잉⁵ 기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되었다. WTO 분쟁패널은 다양한 유형의 제로잉 기법이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 왔다. 그러나 세탁기 사건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와 관련하여 2013년 8월 29일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도 통보함으로써 분쟁이 개시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표적덤핑 조사에서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도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패널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전해지며 2016년 3월 경 패널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이 상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속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12월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월풀(Whirlpool)사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로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상계관세

미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156건) 상계관세를 부과한(86건) 나라이다. 2위인 EU의 조사개시 건수(74건)와 부과건수(35건)와 비교해도

4_ 표적덤핑이란 수출자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5_ 제로잉은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반면 수출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산출되게 된다.



미국은 모두 2배가 넘는 정도이다.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미국은 18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고 7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9월 현재 미국으로부터 세로절단후판, 세탁기, 스테인리스냉연강판코일 등 3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 받고 있다. 또한 내식강, 열연강판, 냉연강판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내식강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가 2015년 11월 6일 한국산 내식강에 대해 0.69%~1.37%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냉연강판에 대해서 2015년 12월 15일 제품의 최종가격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허용수준인 1% 이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⁶ 2016년 4월로 예정된 최종판정에서도 보조금의 비율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인 것으로 판정되면 상계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철강업계의 조사 신청에 따라 미국 조사당국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였지만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의 미미한 것이어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최근의 것만 해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강철 못, 송유관 등 다수이다. 보조금액이 최소허용수준 이하라는 이유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그 빈도도 상당하다는 사실은 미국 철강업계가 상계관세조사 신청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통관

과도한 안보검사에 따른 통관절차 지연

미국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나라의 對미

6_ 보조금액이 제품의 최종가격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으로 간주되어 조사가 종결된다.

수출에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국내 업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과거 AMF(Advanced Manifest Service), 현재는 ‘10+2 Rule’로 불리는 수입자 안보신고(Importer Security Filling, ISF)를 비롯한 여러 제도를 통한 통관절차를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 통관검사 중 하나인 안보검사에서는 수입자 안보신고(ISF), 운송업자 선적목록 신고(Carrier Manifest) 및 공급선상 관련자들의 안보 프로그램 참여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안보위험성이 높을 경우 일차적으로 Manifest Hold/NII(VACIS)⁷ 방법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검사에는 통상 4~5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400~6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세관에서 부담하지 않고 검사 장치의 운영업자가 세관과 협의한 비용요율표에 따라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심스런 흔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2차적으로 완전개방검사(Full Scanning)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5~7일의 시간과 컨테이너 당 1,000달러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완전개방 검사 후 다시 적입할 때 화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책임소재 입증에 불분명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미 한-미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른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재검사 하는 등 과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관 집하장 설치 및 검사인원 부족 등 문제로 인한 통관 지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_ 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VACIS) :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 운영 방식 중 하나로, 항만에서 이동식 컨테이너 화물 검색기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면서 검사하는 유형임.



EU

EU는 2014년 기준 전세계 GDP의 23.5%인 18.5조 달러를 차지(IMF 통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상대국이다.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EU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443억 달러와 519억 달러이며, 대EU 상품 무역수지는 7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대EU 주요 수출 품목은 선박(77억 달러), 승용차(46억 달러), 자동차부품(3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승용차(69.5억 달러), 의약품(20.5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17.3억 달러) 등이다. 한·EU간의 상품 무역은 2002~2008년 동안 크게 증가(연평균 16.8% 증가)하였으나, 2009년 남유럽에서 시작된 EU 재정위기가 유로존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 달러 내외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대EU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4년 양측 간 상품교역액은 1,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62~2015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EU는 우리나라의 최대 투자 국가⁸⁾로,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투자(FDI) 중에서 EU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80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2011년 50.3억 달러(전체 FDI 중 36.8%)에서 2012년에는 27.1억 달러(16.7%)로 급감하였으나, 2013년에는 48.0억 달러로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4년에는 6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EU 해외투자(ODI)는 1968~2015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539억 달러이다.

8_ EU는 국가가 아닌 경제통합체이지만 편의상 국가로 명시함.

한·EU FTA는 2009년 7월 타결되고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이후 만 4년 5개월 간 잠정 적용되었으나 2015년 12월 13일부터 전체 발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 기간 동안 효력이 제외되었던 문화협력 의정서와 지재권 형사집행 일부 조항(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 시 형사처벌 절차 및 처벌)까지 효력을 갖게 되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V·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준

EU의 최근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TV 및 디스플레이에 대한 에코디자인 기술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WTO 통보 등 절차를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TV 크기와 정비례한 방식의 현행 전력소비 기준을 TV 화면이 커질수록 더 큰 폭으로 축소하는 방식의 전력소비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85인치 TV의 경우 2017년에는 전력 소비기준이 현행 기준의 37%, 2019년에는 26%, 2021년에는 14%로 낮아지게 되어 고화질·대형 TV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개정된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화질 구현을 위한 최첨단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여 제품 생산이 어렵게 된다. 같은 스크린 크기의 Full-HD TV와 비교할 때, UHD TV의 경우 픽셀 비율이 4배 높아 소비전력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최신 UHD TV 15개 모델 중 10개 모델이 허용 소비전력을 초과하게 된다. 현재 85인치 미만 TV는 해외 경쟁업체들도 생산하고 있으나, 85인치 이상 TV는 우리 기업만 생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9월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상품 무역위원회 개최와 EU측과의 정부간 양자협의 개최 시 대형 TV에 대한 소비전력기준의 완화 및 UHD TV에 대한 별도 기준 수립을 요청하였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하여 EU측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3단계 전력 소비 요구사항의 완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우리측은 2017년과 2019년에 시행되는 1단계 및 2단계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면서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리지침 및 유해물질 사용금지지침

EU 집행위는 2002년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WEEE Directive 2002/96/EC)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 및 재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지침은 2005년부터 25개 회원국에 의해 국내규정에 반영되어 시행되었으며, EU는 2012년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개정(안)(WEEE Directive 2012/19/EC)을 마련, 2014년 12월부터 이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002년 법안에서는 개인당 연간 최소 4kg 중량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이었으나, 2009년 개정안은 2016년까지 EU 전체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최소 85%를 재활용할 것을 명시하되, 폐기물 회수율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국가별로 연간 총 시장출시 품목의 총량기준 45% 감축 및 개인별 최소 4kg 씩 감축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U는 동 지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2005년 이후 출시제품에 대해서는 관련제품의 생산자 및 유통 업자에게 제품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무료로 동 제품의

폐기물의 수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기반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⁹

한편, EU는 2003년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시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및 PBB, PBDE 등 방염제 같은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RoHS Directive 2002/95/EC)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3년 1월 EU는 동 지침의 그간 시행효과의 점검을 통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개정(안) (RoHS Directive 2011/65/EU)을 시행 중이다. 동 개정지침은 기존 EEE 10가지 제품군에서 제외되었던 의료장비와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가 포함되었고 10개 제품군 외 전기·전자제품도 포함되었다. 동 지침의 규제 대상자는 최종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으로 부품 및 중간 조립업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전자제품 관련 EU의 환경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은 EU의 규제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EU의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정보제공, EU환경규제 관련 R&D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민관 공동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 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28개 EU 회원국과 각국 기업에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 한도를 규정하고

9_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웹사이트 참고
<https://www.compass.or.kr/know.do?pageNum=1&subNum=1&command=view&idx=6F9B8A6A-7841-48DF-BDA1-20F225D5DA31> (2016.1.14 방문)



초과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U는 2008년에 2012년부터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국제항공부분에 탄소배출거래제도(ETS)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거센 반대¹⁰⁾에 부딪혀 1년간 ETS 도입을 유예한 바 있다. 2013년 10월 16일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선의 EU 역내(EEA) 항공 배출량을 포함하는 ETS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발표하였다. 동 개정안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국제항공에서의 탄소배출감축 계획안을 마련 중임을 고려하여 EU-ETS 시행을 잠정 연기하되, ICAO의 항공탄소감축 합의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독자적으로 역내 국제항공부분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및 탄소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EU는 2014년 4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합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년까지는 유럽 역내 간 운항편(intra-EU flight)에 대해서만 ETS를 적용하고 유럽 상공을 지나가는 해외 항공사의 EU 역내 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의 도입은 2016년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다만, 2016년 ICAO 총회에서 글로벌시장기반조치(MBM) 계획 마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EU는 2017년부터 EU 역내 관련 국제 항공사에 대한 ETS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타국 항공사에 관련된 ETS 시행시 타국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제38차 ICAO 총회 기후변화 결의안(13.10)에 상충되는 조치이며, 또한 탄소배출 감축과 감축목표 미달성시 탄소세 납부 등 우리나라 국제 항공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10_ 2012.11월 EU의 ETS 도입을 시도할 당시 인도, 미국, 중국 등의 심한 반대가 있었다. 당시 인도는 인도영공을 폐쇄한다며 반박하였고, 중국 항공사들은 에어버스로부터 구매하기로 한 항공기 55대의 주문을 동결함.

우려되는 바, 앞으로 동 제도 시행에 대해 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포장재 폐기물 관리

EU의 「Directive 94/62/EC」은 포장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침으로서, 포장재(packaging)의 개념기준(3가지)과 예시(부속서 I)를 담고 있다. 이는 산업용, 상업용, 가정용, 상점용, 서비스용의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EU 회원국은 폐기물 발생예방(prevention)을 위해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집행위는 포장재의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유럽기준(Europe standards) 마련을 지원하고 포장재 생산자의 의무이행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동 지침은 2004년 2월 「Directive 2004/12/EC」으로 개정되었는데, 중량 기준 회수율(recovery)을 60% 이상으로, 재활용율(recycling)은 55~80%로 상향조정하는 등 회원국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여야 할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목표를 강화하였다. 포장재관련 최소 재활용율(중량기준) 목표도 기존 15%(일률적)에서 유리(60%), 종이 및 합판지(60%), 금속(50%), 플라스틱(22.5%), 목재(15%) 등 재질별로 강화하고, 재활용/회수 촉진을 위해 포장재에 재질(nature of the packaging materials)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유럽내 연간 80억 개가 버려지는 플라스틱 봉투의 환경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동 포장 및 포장재 지침을 2015년 4월 개정(2015/720)하여, 회원국들에게 두께 0.5mm이하 경량 플라스틱 봉투 사용에 대해 2018년까지 부담금 부과체제를 도입하거나 사용량 감축 목표(2019년 말까지 1인당 90개/년, 2025년 말까지 40개/년) 달성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4년 10월



부터,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봉투에 부담금을 부과(소매점에서 유상제공)하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위는 2015년 말까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의 사용을 저감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제안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강력한 감축대책이 예상된다.

동 지침은 역외 국가에 대한 추가 부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치금, 생산자책임제도 등 동 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별 세부 정책수단이 관련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를 유발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 수출업체도 동 지침의 내용 및 회원국의 구체적 이행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은함유제품 관리 강화

EU는 치과 아말감, 체온계, 형광등, 전지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서 사용되고 화력발전, 시멘트 제조 등을 통해 환경에 배출되는 독성물질인 수은의 생산, 유통, 폐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전통적으로 수은 수출국으로서 한때 전 세계 수은 공급량의 25%, 연간 약 3,000톤을 공급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수은과 수은을 함유한 일부 제품의 수출을 금하고 있다. 반면 수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2007년 현재 연간 320톤 이상을 치과 치료, 계측기기, 에너지 효율 램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은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2005년부터 수은배출 및 사용 저감 정책(Community Strategy concerning Mercury 2005)을 추진하였고, 수은을 함유한 체온계 등의 마케팅을 금지하는 지침(2007/51/EC)을 채택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EU 지역 외부로의 수은 수출을 금지하고 수은에 대한 안전한 저장을 의무화하는 규정(Regulation (EC) No 1102/2008)을 채택,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수은의 생산, 사용, 배출, 폐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 수은협약(미나마타 협약)이 2013년 10월 채택되었으며, EU 집행위는 2016년 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수은협약이 EU 비준 등을 통해 2016년 발효될 경우, 원자재 수은의 교역이 제한되고 2020년 이후에는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은첨가제품의 제조, 수출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수은 배출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폐기물의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 EU는 동 협약의 발효와 함께 더욱 강화된 수은제품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산업계에서도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구제 조치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치

EU 집행위는 2014년 8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 GOES)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제품에 대해 EU 집행위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첫 사례이다. EU 철강업계는 2014년 6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제품을 반덤핑으로 EU 집행위에 제소하였다.

2015년 5월 발표된 예비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의 존재 및 이로 인한 산업피해가 인정되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말 확정, 공고된 최종 판정에서는 방향성 전기강판(특히 고품질 제품군)의 공급 부족에 따라 조사기간 이후 동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종가세 형태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EU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 제품군별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형태로 최종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도 취소되었으며,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팔 경우에 추가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EU는 최근 한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018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는 2002년 8월 처음으로 동 제품에 대한 고율(4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 1차 연장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12월 EU는 2차 종료재심 결과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시 반덤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EU 역내 산업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반덤핑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EU의 동 제품에 대한 15년에 걸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EU 역내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당초 취지를 감안할 때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친 무역구제 조치로서 양자 간 교역을 사실상 봉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주요국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 및 글로벌 철강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EU, 미국 등 철강 수입규모가 큰 주요국들의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가 수입제한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타

분쟁광물에 대한 규제

EU 집행위는 2014년 3월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에 대한 EU 통상 전략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관련 EU 규정이 입법 과정 중에 있다. 동 법안은 분쟁지역 또는 위험지역의 무장단체들이 주석(tin), 탄탈륨(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등 광물의 채굴 및 교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당초 제안은

분쟁광물의 최초 제련단계부터 광물의 원산지에 해를 끼치지 않은 깨끗한(clean) 광물임을 자발적 자기인증제(self-certification)를 통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제련·정제소의 목록을 발간하여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수입업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 법안의 입법 과정 중에 유럽의회는 자기인증제를 의무화하도록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동 규제는 다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이며, 휴대폰, 세탁기, 냉장고 등 동 광물들을 사용하는 가전제품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재정 보고서 발간에 대한 지침

EU는 2014년 9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화할 목적으로, 연간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의 회계 보고서 비재정 보고서(non-financial statement) 발간을 의무화하는 ‘대기업의 비재정·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신 지침(Directive on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Companies and Groups)’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재정 보고서 외에 환경·사회·고용 문제 등과 관련, 기업체의 활동·입장 및 사회적 영향 관련 내용을 담은 비재정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동 지침이 채택됨에 따라, 회원국의 국내입법 절차를 거쳐서 2017 회계연도 중 동 의무 적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나고야 의정서 이행법률

EU는 2014년 5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EU내 이행법률을 채택하고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EU 회원국 중 2015년 10월 기준 덴마크, 헝가리, 스페인, 크로아티아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회원국도 2016년 내에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유럽국가와 개도국 등 50개국



이상의 비준으로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2015년 10월 현재 92개국이 서명, 68개국이 비준하였다.

동 이행법률에 따라 유전자원의 사용자는 유전자원에 대해 원산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접근하고 타당한 이익을 공유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관련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한 승인을 받거나 상업화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 될 경우 관련 절차 준수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일본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상품 무역은 수출액 327억 달러, 수입액 537억 달러, 무역수지는 215억 달러 적자이며, 우리나라 상품 무역에 있어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인 제3대 교역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20.1%), 철강판(6.6%), 무선통신기기(6.2%), 반도체(5.9%)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8%), 철강판(6.2%), 플라스틱 제품(5.3%), 기초유분(4.9%) 등으로 자본재·중간재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상품 무역수지는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36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일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 유치된 IFDI(1962~2014년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380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약 16%를 차지(미국에 이어 제2대 투자국)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른 투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OFDI(1968~2014년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61.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6% 규모로, 대부분 한·일간 무역, IT서비스, 해운여행 등 비제조업 관련 업종이며, 최근 SW업종의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일 FTA는 2003년 10월 협상 개시가 선언되고 제6차 협상까지 이루어졌으나 2004년 말부터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한·중·일 FTA,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일본 수산물 수입쿼터(IQ)

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며, 할당방식은 ①對한국 쿼터(김) ②글로벌 쿼터+對한국 쿼터(방어 등 9개 품목) ③글로벌쿼터(오징어 등 7개 품목)로 나뉘어진다. 대한민국 국별 쿼터 대상 수산물 9개 품목(②의 경우)에 대해서는 금액할당으로서 △수요자 할당, △상사 할당, △선착순 할당의 방식이 있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 쿼터별 수량제한을 두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의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일본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7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관련, 2001년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1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여 2002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최근 2015년 5월 한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진행 중에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2015년 5월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는데 한국산 수산화칼륨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칼리전해공업회가 2015년 2월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였다.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제품 또는 백색 플레

이크 고체로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액체 비누나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 2014년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 중국산은 4.2%로 한국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2016년 상반기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히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 적극적으로 반덤핑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입찰정보 접근 제한

일본의 정부조달제도는 각 수요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제도를 운영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분산조달방식의 특징은 입찰 참가자격의 관리, 조달정보의 제공, 입찰집행 등 모든 조달과정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공급자들은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자 등록이 필요하며 입찰정보가 인터넷 등에 일괄적으로 공표되지 않아 업체들이 일일이 해당 기관에서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국제입찰의 경우 입찰 관련 정보가 모두 일본어로만 제공되어 외국 업체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다.

또한 일본은 외자물품구매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공급자가 일본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언어, 정보 습득, 서류작성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상당하다.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일본기업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분산조달방식의 영향으로



기업과 발주기관 간에 형성된 단골거래처라는 의식이 있으며, 기업간에도 영업권역을 서로 인정하고 침범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어 신규 참여자에 대해 상당히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산 조달제도 및 독특한 조달관행은 일본의 조달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수립 · 공고

일본은 2015년 3월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수립 ·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만 가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해 수입자에 ‘검사명령’을 계속 발동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제품검사 대상품목은 돼지고기, 장어, 생식용 피조개 및 키조개, 양식광어 및 그 가공품, 대합 · 바지락 등 쌍각류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마토 및 그 가공품, 파프리카 및 그 가공품, 적색/청색 고추 및 그 가공품, 들깨 및 그 가공품 등 12개 품목이다.

2015년에 새로 추가된 주요 사항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냉동 가공식품 등의 성분규격 위반상황 등을 고려한 가공식품 성분규격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의 결과에 기초하여 수입자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위생관리 체제를 철저히 하게 지도하게 하며, 「수입가공식품의 자주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수출국에서의 자주적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게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농약검사 관련,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경우, 식품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Positive List System’을 계속 운영하며,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일률적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공통분포 병해충 검역 문제

일본 검역당국은 한일 공통분포 병해충으로 일본내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도 검역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병해충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하여, 발견되어도 별도 검역 조치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199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53종을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본측은 2015년 10월 현재까지 40여종을 인정하였지만 13종은 아직 미지정한 상태이다. 신선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조치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추가비용 발생으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일본 소비자청 및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 제조되는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해 원료 및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원료 원산지는 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주원료(원재료 중량이 50% 이상인 것)에 대하여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품목은 녹차 및 녹차음료, 떡, 볶은 땅콩류, 흑설탕 및 그 가공품, 곤약, 건 버섯류, 조미한 식육 등 22개 식품군과 장어가공품, 가쓰오부시, 농산물 절임, 야채냉동식품 등이다.

식품 안전 인증기준 강화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까지 식품 안전 인증 강화를 위해 보다 강화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현재 지자체(도도부현) GAP, 민간단체 GAP, 농협 GAP 등 다양한 GAP 인증제도를 운용중이나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국내보급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금번에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은 ISO 공업규격을 심사하는 ‘일본 적합성인정 협회’가 실시기관을 감사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심사시간을 2배로 늘리며, 농학부 학위 이상 소지자만이 심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농림수산성의 발표는 일본 내 생산되는 농식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인증 강화이므로 엄밀히는 한국 기업과는 무관하나, 인증기준의 강화는 일본 소비시장에서 식품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HACCP, FSSC22000 등 인증취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전 식품관련 인증 및 위생에 대한 증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기타

건설분야 규제

일본의 건설업법에서는 경영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건설현장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경영사항 심사시 평가가산점 인정요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건설업법에 따르면 특정 건설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원 중 상근인자 1인이 허가 업종에서 5년 이상 경영업무 관리 책임자 경험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들이 5년 이상 경영 경력이 있는 임원을 일본에 파견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본은 하청계약 청부대금 합계 3천만 엔 이상의 공사 현장에는 감리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조건으로 ‘1급 국가자격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국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업체의 기술력 평가에 있어서도 감리기술자 강습 수강자에 대한 가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강습은 불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일본 내부의 규정이지만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활어 운반차량의 일본내 운행

일본에서 한국 활어 운반차는 일본항만 보세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일본 활어운반차는 임시운행 허가증만 있으면 등록 없이 국내 운행이 허용되기 때문에 한국 활어운반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체약국간 차량 등록 없이 일시 운행이 가능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승용차에만 인정하기 때문에 활어운반 차량 등의 상업용 차량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활어운반 차량 일시운행 승인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일본 내 근거 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항운협회 사전협의제도(터미널 변경자유 허용)

일본 항구에서 터미널 입출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 선사는 민간단체인 일본 항운협회 등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항만 입출항 및 항만 노동자의 고용과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일본 항운협회와 사전 협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 하역회사와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입출항 변경 시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경미한 안건은 전월 20일까지, 터미널 고용상황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안건은 전전월 20일까지 협의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운항선박 변경 시 효율적인 하역작업을 위해 터미널 입항 7일 전후로 통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일본은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외국 선사의 자유로운 터미널 이용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상품 무역액에서 23.6%를 차지(수출 26%, 수입 20.7%)하는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262억 달러, 수입액은 830억 달러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 1~9월 대중국 상품 무역에서도 수출이 1,021억 달러, 수입이 66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 무역수지는 2005~2008년 동안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양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다시 크게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 1월을 기점으로 대중 수출은 다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20.3%), 평판디스플레이(16.2%), 무선통신기기(5.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12.4%), 무선통신기기(9.5%), 컴퓨터(5.9%)이고, 섬유류(7.0%)와 농림수산물(4.6%)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양국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1962~2014년 9월 누적액(신고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IFDI 유치금액 중 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6%(59.8억 달러)로 EU(34.9%), 미국(24.1%), 일본(15.9%)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임대업(28.3%)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운송기기(12.6%), 비즈니스 서비스(12.4%), 화공(10.1%), 전기전자(8.8%), 도소매(8.3%) 등도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OFDI는 1968~2015년 9월까지 누적액(실투자금액 기준)이 509.4억 달러이며,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중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미국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중국 투자는 제조업(특히 전기전자, 운송기기, 화학, 금속 등)에 78.6%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유통(5.5%), 금융·보험(5.1%), 부동산·임대(3.1%)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한·중 FTA는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외에도 한국과 중국은 한중일 FTA, RCEP 등의 지역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수입허가증 발급 지연

중국은 합리적인 외환관리, 주요 상품 및 원자재 등의 수입관리를 위해 쇠고기, 우유, 석탄, 천연가스, 이동통신제품, 항공기,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야 539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증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요 수입상품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종의 신고제도이다. 그러나 수입에 필요한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규상 검열기준 30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이 가능하나, 발급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는 한 달 내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 되는 데에도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통관

자의적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부담 징수

중국의 자의적 품목분류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부당하게 높은 관세 및 소비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HDMI 모니터¹¹⁾와 관련하여 WCO

11_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모니터는 컴퓨터신호와 영상신호를 모두 재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품질 영상과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로, 이에 대해 각국마다 “컴퓨터용” 또는 “기타용”으로 분류하면서 품목분류의 불일치가 발생함. 우리 관세청은 2010년 11월부터 이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하여 왔음.



(세계관세기구)는 2014년 9월 제54차 HS위원회에서 ITA(정보기술협정)에 포함되는 컴퓨터용 모니터로 분류를 결정, 이에 따라 기존에 ‘기타용’으로 분류한 국가는 컴퓨터용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¹² 중국은 ‘컴퓨터용 모니터’에 대해서는 ITA품목으로 0%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기타용 모니터’에 대해서는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현재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HDMI 모니터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료과세(5%)를 납부하고 있다. 또한 흑양파즙 품목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야채주스로 분류하였으나, 이후 음료로 품목 분류를 변경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형 무한궤도차량의 부분품인 무한궤도에 대하여 자전거체인과 동일한 HS코드로 품목을 분류하기도 한다.

각 지방 해관(세관)에서도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해관 내에서도 담당자마다 HS코드 분류가 상이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담당자가 바뀔 경우 세율이 높은 새로운 HS코드가 적용되는 등 관세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여러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국수출시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분류에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부당한 행정처리 및 사전고지 미흡

중국 세관의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는 통관기간을 길게 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전 고지가 없거나 규정과 어긋난 검사, 과도한 관련 서류 제출 등의 행정처리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정부의 사전고지가 미흡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전에

12_ WCO 결정을 반영하는 것이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나, 미반영시 WCO에 명확한 사유와 함께 보고 절차가 필히 이루어져야 함.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일례로 한 업체는 규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설비를 수입하였는데 사전 검역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했으며, 이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업체는 로비에 의존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면세품에 대한 서류검사와 관련하여, 규정상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8년이 지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이를 소급하여 검사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또한 세관마다 같은 품목에 대해 세관별로 중복검사를 실시하는 등 잦은 환경검사와 과태료 부과, 중국 내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환경기준 적용 등으로 국내 업체들이 영업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세관의 감독대상인 위탁가공무역용 보세화물의 경우, 수속비 미납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되어 생산이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

물품 재수입시 부당한 관세 부과

중국내 보세공장 운영시 완성품을 수출한 후 고객의 계약취소로 해당 물품을 다시 중국 내로 들여오는 경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반송되어 재수입되는 경우는 1)고객사의 계약 취소, 2) 물품이 불량일 경우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중국에서는 2)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반면, 1)의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¹³ 이에 따라 수출 후 계약취소로 인해 재수입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부당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항공운송의 과도한 통관절차 및 비용 발생

중국의 물류·통관에서의 낙후된 경쟁력은 한국의 對중국 전자상거래

13_ 한국의 경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구매자가 인수를 거절한 경우에도 하자발생, 불량 등으로 반송된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온라인주문)를 통한 수출확대에 있어 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항공운송이 주로 이용되는데, 이 경우 물류비가 매우 비싸고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높은 운송비로 인한 문제는 중국소비자들의 수요 증대에 큰 걸림돌인데, 중국으로 항공소포 발송 시 기본요금 기준으로 건당 50~120 RMB가 소요된다. 또한, 정상통관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수입허가 및 인증 등의 절차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화장품 수입허가 신청은 품목당 6개월~1년 기간 동안 약 6,000~20,000 RMB,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년 간 약 20~30만 RMB가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의 항공운송 대신 해상간이 통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면 해운을 통해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국의 무역원활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샘플 통관 애로

중국은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시험 인증을 위한 샘플 통관이 필요하다. 샘플 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샘플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량 발송이 대부분인 샘플 통관의 경우 해관에 명확한 업무 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들어오는 샘플의 정식 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서류 통과만 짧게는 2주, 길게는 두 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현지기업은 통관에 따른 시간 지연 문제를 겪지 않자보니 결과적으로 로컬 경쟁사의 先 시장 진입이 발생한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된 세관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화장품, 식품 등 전반에 걸친 샘플통관상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우리나라는 중국내 총 28개 검사기관을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수입 통관 시 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있으나, 중국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한국 수출 업체의 중국 수출 시 통관시간의 장기간 소요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중국에 식품 수출시 통관시간 장기간 소요로 유통점 납품시 유통기한의 1/2~2/3가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외시험·검사기관제도를 마련하여 동 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인정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인삼 통관

2012년 중국은 기존에는 약재로만 분류하던 인공 재배된 5년 이하의 인삼을 신자원식품(식품 원료)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5년근 이하 인삼은 규정 변경 후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일부 세관에서는 신자원식품 통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여, 인삼의 신자원 식품 분류 이후 대중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많은 인삼 관련 업체들 중 실제로 수출에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04년에 제정·시행한 수입 중약재에 대한 품질검사기준 중 우리나라 홍삼에 대한 품질기준인 ‘고려홍삼질량표준’의 경우에도 지역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하여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수출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홍삼질량표준’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협의를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역구제조치

반덤핑 조사 및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반덤핑 조치도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이 부과한 나라이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였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비율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1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10건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폴리실리콘과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이 모두 석유화학제품일 정도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석유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석유화학제품으로는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비스페놀 A, 아세톤, 아디프산, 테레프탈산, 폴리우레탄 등이 있다.

중국은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폴리염화비닐, 방향성전기강판, 폴리아크릴로니트릴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디프산과 테레프탈산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재심절차가 진행 중이다. 폐놀에 대해 부과되어 오던 반덤핑 관세는 재심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2015년 1월 30일 반덤핑관세부과가 종료되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정교해진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다수의 WTO 분쟁사건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여전히 투명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조금

철강산업 보조금

중국은 철강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해당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증치세(부가가치세 17%)를 부과한 후 이를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출시 차등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철강무역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중국의 철강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상계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법 제도 이행의 투명성 결여

중국의 정부조달체제는 중앙과 지방, 산업별, 관할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법률은 「정부조달법」(2003년 시행)과 「입찰법」(2000년 시행)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고 상호간 관계가 불명확하다. 한편, 입찰법 시행조례 및 전자조달 관련 세칙은 2012년부터 시행중이며, 정부조달법의 실시조례는 2014년 2월에 제정·공포되어 시행중이다. 조달기관 또한 중앙·지방 차원의 조달집중기구, 조달대행기구 등으로 다양하고, 지방정부별로 조달 절차 또한 상이하다. 정부조달 입찰정보는 중앙정부의 집중구매목록을 제외하고는 각 조달센터, 조달대행기관, 지정 매체 등에 수시로 발표되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신속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응찰시한이 WTO GPA에는 원칙적으로 조달 공고일로부터



40일로 되어 있으나, 중국의 경우 20일로 매우 짧은 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정부조달 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외국 기업들은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습득이 어렵고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조달시 외국기업 차별

중국은 정부조달 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입 제품은 조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조달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입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문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법규와 실제 이행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정부조달법」 제10조에서는 정부조달 시 자국산 구매의무를 명시¹⁴하고 있고, 이외에도 각종 법규 및 정책에 ‘Buy China’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WTO GPA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나, 아직까지 여하한의 국제 규범에서도 자국정부시장 개방을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강제인증제도(CCC)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무역확대 등을 위해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 추세를 반영하여 강제인증 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2003년 8월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 혹은 수입되는 제품 중 CCC 인증 대상품목은 인증을 반드시 획득하여 CCC 마크를 부착해야 수입·유통·판매가 가능하다.

14_ 중국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 제10조에 “정부조달은 자국의 물자, 공사, 서비스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CCC 인증 관리제도가 너무 포괄적이고 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CCC 인증 대상 품목은 2003년에 132개였으나 2006년에 일부 자동차부품이 추가되었고, 2007년에는 완구제품이, 2008년에는 용제형 목기도료, 자기타일, 시멘트 동결방지제 등이 포함되어 2014년 12월 현재 20개 분야 158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¹⁵ 뿐만 아니라 인증절차는 총 6단계¹⁶로 진행되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인증서 발급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90일이 소요되는 등 인증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인증을 이유로 과도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요구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존재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인 5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반드시 자국 심사기관에 의한 공장실사 결과만 인정하고 있다.

제품포장 및 라벨 기준 변경

중국의 잦은 라벨규정 변경으로 인해 이를 미처 준수하지 못한 국내 업체의 제품이 라벨 확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 걸쳐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 문제가 각 지역 출입국검험검역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일례로, 상해 상검국의 외부포장 및 라벨 규정이¹⁷ 청도에서는 통용되지

15_ 2012년 12월에 발표된 CCC 인증 대상품목은 ①전선케이블(4종), ②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기장치(6종), ③저압전기장치(9종), ④소형 전동기(1종), ⑤전동공구(16종), ⑥용접기(15종), ⑦가정용 기기(18종), ⑧음향 영상설비(방송용 및 실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은 제외)(12종), ⑨정보기술 장비(11종), ⑩조명장비(2종), ⑪차량 및 안전제품(16종), ⑫차량 타이어(3종), ⑬안전유리(3종), ⑭농기계(2종), ⑮전자통신 단말기(9종), ⑯소방제품(7종), ⑰안전 기술 예방설비(5종), ⑱무선인터넷설비(1종), ⑲인테리어용 제품(3종), ⑳완구류 제품(6종) 등임.

16_ 인증절차는 ①신청 및 접수, ②서류심사, ③제품검사, ④공장심사, ⑤공장사로 채취검사, ⑥평가 승인.

17_ 통관 전 중국 세관의 제품심사로, 샘플(0.5kg×2개)을 보내야 하며, 통상 2~3개월의 시간과 3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됨.



않으며, 심지어 청도 내에서도 항만에 따라 비안절차가 다르다. 청도 상검국의 경우 외부포장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업무 진행이 느린 반면 (1-3개월 소요), 같은 시의 황도 상검국에서는 스티커 형태 라벨¹⁸을 인정, 규격에 맞게 사전 등록하여 수입 후 제품에 부착하고 통관을 보다 수월히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약, 비누 제조업체의 경우 중국어 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부되어 물류·운송비용, 재고비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IT 제품

중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전자정보제품 오염통제 및 관리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정보제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브롬계 난연제(PBB, PBDE) 등 6가지 독성 화학물질의 포함 여부에 따라 포함된 물질명 등을 제품 라벨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중국이 곧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인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에 대해 2015년 5월 18일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적용 대상을 이전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독성화학물질 목록 지정 제도

중국 환경보호부는 162개 화학품을 수출입제한유해화학목록으로 지정하고, 이들 물품에 대한 환경등기증(유효기간 2년)과 방행단(放行單)(유효기간 6개월) 제출 시에만 물품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 환경등기증은 유해화학목록 제품에 대해 품목당 필요서류와 1만 달러를 환경보호부에 납부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중국 수입상은 수출계약서 별로 방행단(放行單)이라는 수입허가서를 추가로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12년부터는 방행단 발급을 위해 최종 수요자의 환경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환경

18_ 중국에서는 '11년 6월 이후 스티커 형식의 라벨링이 금지됨.

등기증 발급 및 비용 소요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주로 수입상이 부담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수출 완제품에 비의도적인 미량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순물 최대 허용기준¹⁹에 대한 명시가 없어 불순물 미량 검출시 법규위반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TBT 위원회 미통보로 인한 TBT 협정 제2조의 위반 가능성과 중국제품과의 차별로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EU의 REACH 제도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같이 불순물의 최대 허용치가 명시적으로 법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반드시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발급하는 수입 의약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하고, 수입 시마다 CFDA의 수입의약품등록증 및 기타 증명을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의 인정기준이 없어, 수입의약품은 중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있다. 실제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정리에 4~5개월, CFDA 심사평가에 9개월 이상이 소요²⁰된다. 또한 자료의 모든 내용은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동 자료의 준비에만 4~5개월이 소요된다. 참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 원자료(raw data), 생산기록서 등은 영어자료로

19_ EU-REACH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의 경우 비의도적 미량 불순물을 0.1%까지 허용. 우리나라 화평법도 불순물 최대허용치 명시

20_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학의약품 신약의 경우 심사 대기기간이 11~12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제출 가능하다. 중국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약의 경우, 임상 시험을 받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제품에 따라 상이)되며, 한국에서 이미 실시한 임상시험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단, 중국시장에 같은 종류의 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는 임상 시험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으로 진행하며, 수입제품의 제품기준(specification)이 중국 내 기 등록제품에 비해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 CFDA는 비교임상을 하는 경우에도 매우 많은 임상약 샘플 수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관 시마다 품질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약품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품질검사 없이 통과하고,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입고 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중국측에서는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도 중국 해관 통관 시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에서 품질 관리하도록 실시하고 있다.

의료기기 등록 인허가 지연

의료기기는 CFDA의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CFDA는 수입허가 시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2014년 6월 1일 시행) 제 2장 제10조,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임상평가자료 및 허가 시 임상시험 실기 요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CFDA는 2, 3등급 의료기기 중 임상시험 면제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 시 임상시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임상시험 실시 면제 대상으로는 ① 작동원리가 명확하고 디자인이 고정적이며 생산기술이 안정하며 시중 동류제품의 다년간 임상 사용 중 중대한 불량사건기록이 없고 일반사용 용도를 변동하지 않는 경우, ② 비 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③ 동류 제품의 임상시험 혹은 임상데이터의 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CFDA는 의료기기 허가 시 자국 내 CFDA 지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며,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불인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정 이원화

중국은 비특수용도화장품의 경우 제품출시 전에 중국식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내 생산되는 화장품과는 다소 상이한 규정으로서 수입 화장품 규정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로 나타났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행정허가심사에 약 2개월, CFDA 행정접수센터에서 접수 및 발급에만 약 15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되며, CFDA에서 행정심사 역시 약 20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된다. 단, 이는 제출한 서류가 완벽할 경우의 소요시간이며, 실제로 서류 보완, 제출 서류 구비 등 기타 문제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 내 생산된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사후 등록제에서 제품출시 전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나, 제품처방과 제품판매포장만을 등록하는 등 여전히 수입 화장품 규정과는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 기간 및 검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허가 제도의 국내 수입 규정 이원화가 WTO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을 수입할 때도 국내 제품과 동일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은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체결을 통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입화장품 인허가 규정 강화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생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8천 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개당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중국 당국은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위생허가증 발급신청 시 중국내 책임회사의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통상 대리상이 보증을 한다. 그러나 대리상과의 계약이 중도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며, 다른 대리상이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거 보증을 해주었던 대리상이 새로운 대리상에게 수권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나 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화장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중 통상협력 협의회에서 중국측에 동 현안에 대한 개선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한·중 FTA 협력채널 또는 CFDA와의 MOU 체결을 통한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리튬이온전지 안전 국가표준

중국은 2013년 12월 노트북,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표준 제정을 WTO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중국

안전기준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이 국제표준(IEC 62133)과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표준에 없는 요구사항이 존재하고 있어 전지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과 다른 기술적 요구사항으로 인해 중국 수출만을 위한 별도의 리튬이온전지 개발 및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역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등과 공조하여 중국에 대해 WTO TBT 협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응중이다. 한편, 중국은 동 표준이 CCC 대상품목에 포함되며 시험소에 제출하는 승인원에 대해 충전, 방전 조건 등 표기요구사항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나 영어 작성도 가능하며, 배터리 패키지 라벨 요구사항은 번역자가 아닌 간체자만 허용된다고 확인해준 바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특정 식품의 과도한 검역기준

중국 식품표준의 젓갈, 조미김 등 식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국내(식품 공전)의 미생물 규격과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젓갈을 수산 조미품으로 분류하여 일반세균(8,000/g 이하)과 대장균군(30MPN/1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젓갈은 비가열 제품으로서 원료 유래의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존재하여 수산 조미품 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은 조미김을 조류제품으로 분류하고 일반세균(30,000/g 이하)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나, 조미김도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상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어하기 어려워 조류제품의 위생규격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중국이 적용하고 있는 비가열 제품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는 바, 원료 및 제조·가공 특성을 고려한 규격 설정이 요구된다.



보건(기능)식품 위생허가

중국의 ‘특수영양식품’과 ‘보건(기능)식품’은 매 품목마다 중국 식약청(CFDA)의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식품 수입을 위해 보건식품 등록신청 시 CFDA는 신청서, 제조법설명, 효능성분 및 검측방법, 효능평가보고서, 상표등록 등을 포함한 총 22개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²¹ 또한 위생허가(실험)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보건식품의 경우 국가가 정하여 고시한 27가지 효능을 가진 제품에 한하여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데, 보건식품은 생산국에서 이미 생산·판매된 지 1년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생산국이나 국제조직의 관련 표준설명 및 생산판매국가에서 발급한 생산판매 증명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성분구성’이 총 14가지를 넘지 않아야 하나, 대부분의 한국 제품은 20여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5년근 홍삼을 기준으로 5년근 이하는 식품, 5년근 이상은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수출시 의약품에 준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중국은 1980년대 초 상표법과 특허법을 제정한 후 약 20년간은 전세계 지재권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으나, 2005년 이후 중국정부가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강요’를 발표하는 등 지재권 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국가 지재권 사업발전 12.5 계획(2011~15년)”을 수립하여 동 기간에 사회 전반적 제도개선과 과학 기술 업무 진흥, 지재권 보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1_ 처음으로 보건식품 수입 시, 반드시 CFDA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제품번호를 취득 후, ‘보건식품 수입비준증서’에 따라 수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중국의 지재권 출원량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바, 2011년 중국의 발명특허 출원량(526,412건)이 처음으로 미국(504,089건)을 추월하였으며, 2014년에도 발명특허 출원 928,177건, 상표 출원 2,285,358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지재권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타기업 제품에 대한 모조품 유통 등 권리침해 현상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 전지역 법원에 접수된 지재권 민사사건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 들어 증가율은 다소 정체되었지만, 1년간 88,583건이 접수되는 등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이 되었다.

이러한 지재권 출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특히 미국 USTR은 중국을 7년 연속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2013년 8월 중국 상표법을 4차 개정(2014년 5월 1일 시행), 2014년 북경, 상해, 광저우에 지식재산 전문 법원을 설립, 또한 지재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중국 특허법과 저작권법 또한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바, 개정(안)에는 손해배상액 증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검토되고 있는 등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지방정부의 지방 기업 보호주의, 인터넷을 통한 모조품의 유통 등으로 인해 중국내 지재권 침해 현실이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비스 · 투자 장벽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 및 이행의무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전·설립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5년 3월 10일 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완성차를 여전히 투자제한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중국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을 투자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외국기업은 중국 내에 2개 이하의 동종(승합차류, 상용차류, 오토바이류) 완성차 제품을 생산하는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지만 중국측 합자파트너와 손잡고 중국내 기타 자동차 생산기업을 합병할 경우 2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외에도 중국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하는 합자기업에게 공장신설시 신에너지차를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며, R&D 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R&D 인력의 중국인 의무 고용(5% 이상) 요건을 부과한다.

그 외에도 중국은 완성차 특징을 갖춘 자동차부품수입관리방법 제21조에 따라 자동차 완성차 제조 기업에 대해 수입부품의 가격이 60% 이상을 차지하거나 완성차 특징을 가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자동차 산업의 변동 사항은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로, 신에너지자동차 부품 제조에 대한 외자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장려 목록에 포함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에틸렌과 PVC 제조업을 제한업종으로 분류함에 따라 기투자자의 위험이 증대되고 신규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연간 생산 능력 80만톤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을 중국측 대주주 요건을 두어 장려업종으로 분류하였고, 연간 80만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생산과 카바이드 PVC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틸렌 후가공제품 생산’과 ‘아세틸렌법 폴리염화비닐(PVC)’이 제한업종에 포함되었다. 동 목록에서는 일정규모 이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에 따르면 80만 톤 이하 규모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제한된다.

중국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여타 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투자 Negative List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각 국가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설립 전·후 단계의 투자 제한 여부를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알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투자 자유화 수준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률 서비스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서비스 분야 중 로펌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펌은 대표처 형식으로만 진출을 허용하고 한국법 자문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재판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유명 로펌이나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로펌을 설립할 때 까다로운 설립인허가 및 등록절차가 존재한다. 로펌 설립 시에는 중앙정부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1년 이상 소요



된다. 등록절차는 대표처 설립 시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한 한국인 변호사 2명이 주재해야 하며, 개설 후 3년 경과 이후 타지역 사무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로펌에 대한 차별적인 조세가 부과된다. 해외로펌에 대해서만 이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회사수익에 대하여 먼저 세금(이익의 25%) 부과 후, 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다시 세금(세후 순 이익의 10%)을 부과한다.

이외 관광업에서 외자독자기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업무가 금지되었고, 중국 도·소매 시장에서 외자 소매기업의 담배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유통업에서 외국인이 특정상품 판매 시 중국내 점포를 30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중 제약제품, 곡물, 식물성기름, 설탕, 목화, 농업용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판매하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소매기업의 경우 해외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적용시킨다.

금융 분야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설립 및 영업을 규제한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회사는 중국내 증권, 자산운용, 선물업 진출 시 사무소, 합자회사(지분 49% 이하)로 제한하고, 독자설립은 불가능하다. 합자증권사도 설립 초기 중국에서 브로커 업무를 제한한다. 다만 영업 2년 경과 후 신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그리고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은 합자증권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인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라이선스 신청이 가능하다. 선물업의 경우 외국인의 중국 선물회사 일부 지분 참여는 가능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중국은 중국정보통신법령에 의해 외국인의 관련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정보통신법에 따라 정보통신 인프라(통신망), 소핑몰 등의 부가가치전신 업무에서 외국인은 대주주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전신업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49% 이내로 제한). 또한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에 따라서 경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중국공업정보부(공신부)로부터 ICP (Internet Content Provider)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하나 ICP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 외상투자기업은 현실적으로 취득이 어렵다.

뉴스사이트, 네트워크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장소, 인터넷 문화 경영(음악 제외) 등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투자 금지목록에 포함되었다.

케이블 및 전기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자기업이 독자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기본 서비스의 경우 49%, 부가가치 서비스의 경우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최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한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에서도 외국기업은 배제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투자 진출 제한

게임시장은 중국의 외상투자금지목록 중 인터넷 문화경영 금지 항목에 해당되어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ICP(Internet Content Provider) 허가증²²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판호(ISBN)²³ 발급시 내외국인간 차별이

22_ ICP 허가증은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인력,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 및 능력, 완벽한 인터넷과 정보안전보장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외상투자전신 기업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주주의 지분율이 50% 이하인 기업에게만 ICP 허가증을 발급한다.

23_ 중국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종사 기업이 판호(ISBN)를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중국



존재한다. 출판시장의 경우 저작권문제 발생 시 외국기업의 권리 주장이 어렵다. 각 성(省)내 핵심적인 출판사(국영)를 통해 소속된 성(省)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중국내 불법복제나 저작권 문제 발생 시에도 동 권역 위반으로 외국 기업의 권리주장이 어렵다. 또한 중국내 10개 내외의 출판사만 전자출판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중국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영화의 경우 연간 수입가능건수 및 상영시간을 제한하고 DVD 출간에 대한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쿼터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포함 2~4편까지만 극장개봉이 가능하다. 영화 검열 제도로 인해 표현 수위의 한계 및 내용상의 제약이 존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본국으로 송금할 때 약 16%, 타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할 때에는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방송의 경우 해외영화 및 드라마는 당일 방송시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황금시간대(19~22시) 편성이 금지된다. 드라마를 제외한 기타 장르의 해외프로그램은 당일 방송 시간의 15% 이내로 편성이 제한된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 수입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전송할 경우, 중국 광전총국의 '드라마 발행 허가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온라인 방송용 해외드라마는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모든 자막을 제작해야만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방적인 프로그램 판권 판매 등 뿐 아니라 공동제작, 기획, 컨설팅 등 새로운 형태의 협력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이브 공연의 경우 공연개최 승인 절차와 보안서비스가 불투명하며, 음악에서는 해외음악 수입규제가 존재하며 외자기업의 중국 음악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내에서는 '인터넷출판관리장점규정'에 따라 인터넷출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판호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출판관리장점규정'에 게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2009년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간 행정관할 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여러 법문서에 의거하여 게임 출판에도 판호를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 판호 발급은 중국산 30일 이내, 외국산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사실상 수입쿼터로 작용한다.

인도네시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상품 무역은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2.1배 증가하여 2011년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4년 11월 기준 대인도네시아 상품 수출입은 각각 106억 달러와 1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경유, 휘발유, 편직물, 열연/냉연강판 및 합성고무 등으로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저조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으로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은 0.3%에 불과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증유, 천연고무 등이며 해당 품목은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 중국, 홍콩, 베트남, 호주 등에 이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9위(수출입은행, 2014년 6월, 신고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70~80년대 봉제,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9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화되었으며,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투자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로, 2015년 기준 금융 및 M&A, 유통분야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22억 달러였으나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인해 11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한·인도네시아 간에는 2007년 한·ASEAN FTA가 발효(상품협정)²⁴되었으며, 2015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2012년 3월 협상 개시), RCEP(2012년 5월 협상 개시) 등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4_ 서비스 및 투자 협정은 각각 2009년 5월 및 9월에 발효됨.



수입규제

전자제품(핸드폰 및 핸드헬드/테블릿 PC) 수입규제

인도네시아는 핸드폰, 핸드헬드/테블릿 PC²⁵의 불법수입 근절을 위해 수입업자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로부터 수입 라이선스를 사전에 취득한 후, 수입품목에 대해 산업부의 등록허가(TPP: Tanda Pendaftar Produk Impor)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장비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라벨링, 설명서, 보증서 등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입은 정부가 지정한 항구와 공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로 인해 우리기업의 통관지연²⁶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합금강(Alloy Steel) 제품 약 52개의 품목에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입 허가는 수입 업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IP(Producer Importer)나 IT(Registered Importer)의 등록이 필요하며, 합금강 제품이 원자재로 사용되거나 완제품 판매로도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수입증명(Import Verification) 실사 후에 IP/IT 구분 및 등록이 가능하다. IP 유효기간은 1년이며, IT 유효기간은 무역부 규정 종료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25_ HS 8517120000, HS 8471301000, HS 8471309000

26_ 그간 우선통관 절차를 통한 혜택으로 선적과 통관에 5일 정도 소요되었으나, 동 공항: Polonia(Medan), Soekarno-Hatta(Tangerang), Ahmad Yani(Semarang) 조치에 따라 최소 22일 소요 예상됨.

수입자인증번호(API)

인도네시아는 수입목적에 따라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API-P)를 구분하여, 수입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수입자 인증번호제도(API: Angka Pengenal Importir)규정은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으며(무역부 장관령 No.27/2012), 2012년 9월 개정되었다. 개정 전, 일반수입자(API-U) 법인은 1개의 수입상품 코드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①API-U 보유사가 특수관계²⁷⁾를 가진 외국회사로부터 수입 시, 해당 외국회사와의 특수관계 증빙서류를 주재국 인도네시아 공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거나, ②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체 또는 일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수출사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여타군 품목의 수입이 가능하다. 생산용 수입자(API-P)의 경우, 개정 전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시제품(market testing goods) 또는 보완재(complimentary goods) 등의 재화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관련 비즈니스 라이선스 분야의 제품으로 한정, 수출사와 특수관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규정 개정으로 제도가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수입을 위한 복수의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의적 제도 운영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자동 수입허가절차

인도네시아는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등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의 총 97개 품목으로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선정된 등록수입자의 경우,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면제해주기도 하나, 등록수입자로서 자격승인 절차가

27_ 경제활동 통제를 공유하기로 계약, 소유권 공유, 기업결탁, 위탁계약 또는 유통계약, 자금대여 계약, 공급자 계약



모호하고 부정확하여 차별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원예작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농업부로부터 원예작물수입권고(Horticulture Product Import Recommendation, 'RIPH') 인증서를 받은 수입자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는 무역부에 원예작물에 대한 등록된 수입자 또는 원예작물의 생산, 수입자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입자는 개별 수입제품에 대해 RIPH 인증서와 수입자지정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 허가/승인을 무역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원예작물에 대한 비자동적 수입허가제는 해당 물품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수입라이선스 강화 및 수입주류 수량제한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하였다. 해당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이며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지정한 항구²⁸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주류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150%로 적용되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서는 수입 수량 제한을 하고 있으나, 지정 주류 수입자로 등록을 하면 무역부에서 정하는 연간 제한 수량 내에서 수입이 가능하다.

통관

선적전 검사로 인한 통관 지연

인도네시아는 국내법인 무역부장관령 No.19/2008, No.05/2005에 따라 일부 지정품목에 대해 수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PT Surveyor Indonesia 또는 Sucofindo)에 의한 선적전 물품 확인(pre-

28_ 8개 항구 지정: Belawan(Medan), Tanjung Priok(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Surabaya), Soekarno Hatta(Makassar), Dumai(Dumai), Jayapura(Jayapura), Tarakan(Tarakan) ※ Dumai, Jayapura, Tarakan 항구는 식음료만 수입 가능

shipment verification)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대상 품목은 설탕, 쌀, 소금, 광학디스크(공CD 포함) 및 CD생산장치, 섬유, 오존소모 제품, 칼라프린터·복사기, 비위험 및 독성 물질, 중고재, 철강, 일부 전자 제품, 기성복, 장난감, 신발, 식품·음료, 세라믹, 판유리, 타이어, 진주, 원예농산물 등이 있다.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과 관련해서는 섬유류 및 식품류 등 7개 수입 상품군(유제품, Nitro Cellulose, 쌀, 소금, Pre Cursor, 설탕, 광학디스크)이 인도네시아의 선적전 확인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선적전 검사는 관세 포탈을 위한 부정 수입이나 밀수 등 비정상적·불법적인 수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WTO 선적전검사 협정상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전 검사의 본래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통관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지정된 선적전 검사기관에 의한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입 신선 농산물 통관항구 규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2012년 9월부터 신선 원예농산물의 수입 통관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농업부 장관령, No.42/Permatan/OT.140/6/2012),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항구 축소(종전 8개 항구→1개 공항, 3개 항구), 검사 강화 및 쿼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²⁹

한편,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인정협정(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 체결국에 대해 자카르타 항구(판중 프리옥)를 허용하고 검사를 간소화(농업부 장관령 2012년 42호 및 43호)하고 있다. 2013년 현재 CRA 획득국가는 인니의 주된 수입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29_ 신선원예농산물의 통관 가능 항구는 자카르타(수카르노 하타 공항), 수라바야(Tanjung Perak 항구), 메단(Belawan 항구), 마카사르(수카르노 하타 항구)로 제한하며, 통관 검사는 종전 무작위·샘플 검사에서 컨테이너당 검사로 강화되었고, 쌀, 사과, 감, 미역 등에 대해 자국의 수급을 감안하여 쿼터를 책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자카르타 항구 이용 및 통관 검사 간소화를 위해 對인니 주요 수출품인 국산 배 품목의 CRA 획득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는 한국 천안산 배에 한해서 자카르타 항구로 통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전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선농산물의 통관 어려움으로 가공품 위주(조미 김, 김치 등)로 인니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쿼터제로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니 농민들의 피해가 적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쿼터 확대 또는 폐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자국기업 우대 및 불투명한 제도

인도네시아는 외국기업이 자국의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인니기업과의 제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정부조달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인니는 자국기업들의 정부조달 참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조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기업 지분의 51% 이상을 인도네시아 국적자 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자국산 제품을 40%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가기관은 자국산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자국산 제품 및 공급자들에 대해 가격 차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전자조달도입 및 확대로 절차상의 투명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절차적 투명성 역시 개선해야 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조달시장은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가표준(SNI)인증 의무 품목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제인증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2014년 상반기 기준 강제인증품목은 총 268개, 자발적 인증 품목은 7,370개에 달한다. 품목의 리스트 포함 여부는 소관 정부부처인 산업부, 에너지 광물자원부, 농업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결정한다.

해당 인증 품목은 ①SNI 인증 신청 - ②LSPro의 서류 심사 - ③기술 심사 - ④패널 최종 검사 - ⑤SNI 인증서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SNI 발급에는 약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단,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50만 루피아(약 44달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요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인도네시아 기업의 경우 1500달러, 외국 기업은 약 5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비용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15년도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SNI 강제취득품목을 약 60여 개 가량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는 라면, 비스킷, 우유 파우더 등 식료품과 플라스틱 패키징, 세제, 가스난로, 가정용 세라믹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SNI 강제인증 품목이 점차 확대되면서 대인니 수출 비관세장벽이 심화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은 인증을 위해 과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라벨 강제규정 법령 실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라벨 강제규정(62/M-DAG/PER/12/2009)’ 관련 법령을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

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 필수부착 제품은 ①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46개 대분류) ②건설 자재(총9개 대분류) ③자동차 부품 등(총24개 대분류) ④기타 제품(총24개 대분류) 등 이상 4개 군으로 규정되어 있다. 2015년 기준 라벨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품목은 151개이다.

제품라벨 강제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무역부의 DirGen PDN (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Dalam Negeri)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 공문으로 회신해야 한다. 라벨 규정을 어긴 경우 무역면허(SIUP)가 취소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4월 전자제품, 통신기기, IT 기기, 자동차 부품 등에 인도네시아로 된 제품라벨 및 포장에 영구 부착하는 라벨링 제도를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동 규제는 스티커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각인, 인쇄, 접착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 제품 개발 기간 및 비용 증가 등 기업에 부담이 되었으며 시행유예 기간이 없어 업체들의 대응이 어려웠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는 WTO TBT 위원회에 특정 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여 6개월간의 시행유예 성과를 거두었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신선농산물에 대한 지나친 수입검역 강화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신선 농산물에 대해 한국 교민이 주로 사는 자카르타와 먼 항구인 수라바야 항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며 수입검역을 강화하여(무작위 샘플 검사 → 모든 컨테이너 검사) 품질 저하 및 통관 소요 시간 연장을 초래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對)인도네시아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인정협정(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CRA)을 통해 수입국의 식품안전 시스템이 자국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절차를 거쳐, 합의된 농산물에 대해 검역 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에서 가까운 판중프리옥 항구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수출경쟁력이 있는 우리의 과실류 및 버섯류 제품에 대한 CRA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서비스 · 투자 장벽

은행 · 보험 서비스업 규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한 단일 주체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는 인도네시아 은행의 지분 40%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는 단일 주체는 비단 외국인 또는 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자연인이나 인도네시아 회사도 포함된다.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는 인도네시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 또는 지분을 부분적으로 소유해야만 한다. 다만 민간 신용정보 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비율이 49%까지인데, 이 또한 비교적 최근인 2013년 12월에 인도네시아 은행이 신규 규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 진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14년 9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 현지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아야 한다.

투자제한규정(Investment Negative List)으로 인한 투자 제한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 등 다양한 목적 하에 투자 Negative List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 투자

제한 규정(대통령령 No.39/2014)이 적용되고 있다. 2014년 4월에 개정된 네거티브 리스트(PP No.39/2014)는 크게 투자제한 업종,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으로 구분되며, 동 목록에는 투자제한 업종 7개 산업, 18개 업종, 20개 항목과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 16개 산업, 216개 업종, 500여 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투자제한 업종은 내외국인 모두 투자가 불가하며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은 허용조건 10개 중 업종별 해당 조건에 따라 투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의 허용 조건(Persyaratan)은 네거티브 리스트 원문 업종별 목록표상 'a'부터 'j'까지 총 10개로 구분된다. 외국인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종은 일반적으로 허용 조건 'c'에 해당되며 최대 지분 보유 한도가 함께 명시되고 있다. 이 밖에도 g, h, j 조건도 상황에 따라 외국인이 지분 보유가 가능하다.

2014년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 중 가장 주목할 내용은 발전, 환경, 운송, 의료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발전 분야의 경우 자국 내 전력개발을 위한 민자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발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다.³⁰ 환경 분야에서는 비위험 물질 폐기물 처리업의 외자지분을 95%까지 허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운송 분야에서 항만시설에 대한 외자지분은 과거 49%만 허용되었으나 신규 개정판에서는 PPP형태인 경우 최대 95%까지 허용하고 있고, multi mode transport(국내외 포워딩 등)에 대해서는

30_ PP No.39/2014에 따르면 발전 규모나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 제한이 완화 또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①발전용량 100 MW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95%로 유지하되 PPP일 경우 100% 외자지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②과거 1~10MW 급 발전은 생산공정의 일부 협업만 외국 투자자에 허용하고 지분 확보는 불허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외자지분 한도를 49%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단, 1MW 이하는 여전히 불허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 ③전력 설비 가설 분야는 과거 95%까지 외자지분을 허용하였으나 2014년 개정판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④송배전 분야에서는 과거 외자지분을 95%만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PPP일 경우 100%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병원서비스의 경우 아시아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자유화 확대의 일환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해 각급 병원 지분 보유 한도를 확대하였다.

한편, 금번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강화되거나 완화된 주요 내용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 농업

쌀, 옥수수, 콩 등 주요 식용작물 업종은 과거 면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49%까지 인정하였으나, 개정판에서는 25헥타르 이상의 면적에서 재배할 경우로 적용 기준을 강화

☐ 원예

포도, 열대과일, 귤, 사과, 석류, 베리류, 약재, 버섯, 화초 작물류 씨앗업), 재배업, 프로세싱, 실험실(연구업), 원예 관광업 및 원예작물 기타 서비스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최대 30% 허용 규정을 신설

☐ 축산

2014년 개정판에서는 125마리 초과 양돈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해 외국인에 허용하는 항목을 신설(2010년 리스트에서는 125마리 이하의 경우 내국인에만 허용하도록 규정)

☐ 어업

육상에서 12마일 이상의 거리를 두고 총톤수 100톤 이상 어선을 사용하는 조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되었으나 2014년 개정판부터는 특별 허가 취득시 외국 투자 기업도 가능하도록 변경

☐ 오일&가스

오일,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의 탐색, 개발, 운영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제한은 확대된 반면 지열 등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확대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오일가스 분야 설비건설 관련 육상 오일가스 업스트림(upstream) 생산설비, 육상 파이프라인 건설, 육상 저장 및 판매시설의 설치 내국인(기업)에만 허용하고 Platform은 75%, Spherical tanks는 49%, 해상 (Offshore) 파이프라인은 49%로 외자지분 한도를 설정)



- 과거 제한 규정이 없었던 자원 탐사 서비스에 외자투자지분 한도 설정(오일가스 49%, 지열 95% 등)
- 육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과거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외국인 투자 불가로 변경되었으며 해상 유전·가스전 드릴링 서비스는 외자지분 한도 95%에서 75%로 축소하였고 지열 분야는 90%에서 95%로 확대
- 유전, 가스전의 Q&M, 엔지니어링, 기술검사 등은 외자지분 95%에서 국내 기업 한정으로 변경

상거래

자국 내 중소기업인 보호와 도매(유통) 등 서민경제와 관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다수 신설

- 도매(유통), 창고업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 33%로 외자지분 한도를 신설하고, 냉장 보관업은 수마트라, 자바, 발리에 투자할 경우에만 외자지분 33%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칼리만탄, 술라웨시, 누사둥가라, 말루꾸, 빠루아에 투자할 경우 67% 까지 허용
- 슈퍼마켓/미니마켓, 백화점 외의 소매업, 게임·장난감,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인터넷 또는 우편을 사용한 소매업, 식음료 소매업은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대중 의견조사 및 시장조사는 금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원칙적으로는 내국인에게만 허용하되, 아세안 회원국 투자자는 51%까지 외자지분 한도를 허용
- 복사, 제본, 사무지원 서비스, Alternative trading(BKPM에서 추후 상세 정의의 추가 발표 예정) 등은 내국인만 가능하고 선물(Future) 교역은 외자지분 95%까지 허용

관광·창조경제

지방정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텔급 숙박업소의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는 최대 49%, 현지 중소기업과 합작한 경우 51%까지 허용하되 자바, 발리지역은 최대 70% 까지 인정

- 골프장 투자는 자바, 발리 지역이 70%, 그 외 지역은 100%로 지분 한도를 인정하고, 아울러 동영상을 포함한 광고시장도 아세안(ASEAN) 투자자에 한해 51%까지 외국인 투자지분 한도로 인정

통신·정보

유·무선·위성통신은 65%로 외자지분을 확대한 반면 데이터통신 서비스와 인터넷 중계서비스는 각각 95%, 65%에서 49%로 지분 한도는 축소하였으며, 통신탑은 여전히 외국인투자를 불허

- 2010년 인도네시아 투자 Negative List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업종을 농업·임업·문화관광·통신정보·금융 등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외국인·외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를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
 - ※ 예를들어 지역사회 방송국(라디오, TV), 전화/인터넷 키오스크 및 가정/건물 케이블 설치 등은 국내 중소기업 전용 업종, 통신탑 건설/운영, 신문사, 사설 방송국(LBS) 및 청약제 방송국(LPB)의 경우 100% 국내 자본으로 제한
-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하에서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는 통신망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³¹, 멀티미디어/인터넷 서비스 제공(ISP)(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³², 메일 서비스(49%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통신기 검사업(95%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등

31_ 세부적으로 고정망은 49%, 폐쇄 고정망은 65%, 핸드폰 네트워크는 65%까지 지분 허용

32_ 세부적으로 데이터 통신 서비스는 95%, 인터넷 전화 서비스는 49%, 인터넷 연결 서비스(NAP)는 65%, 기타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49%까지 지분 허용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한 이후 양국간 상품 무역이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14년 303.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한·ASEAN FTA가 발효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양국간의 상품 무역은 약 4.2배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224억 달러와 8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44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전기제품(40.6%), 기계류(14.5%),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11.7%), 화학공업제품(11.6%)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섬유류(34.5%), 전자전기제품(20.8%), 농림수산물(18.2%), 생활용품(10.3%) 등이다.

베트남의 대한국 투자는 매우 미미³³한 반면, 베트남은 1968년~2015년 6월 누계 기준 미국, 중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4대 OFDI 대상국이다. 1968~2015년 6월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FDI 누적액은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19억 달러(전체 OFDI에서 4.1%를 차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57.3%)과 광업(16.9%)이며,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임대(7.9%), 건설업(3.7%)에 대한 투자가 많이 시행되었다.

한국과 베트남간에는 한-ASEAN FTA 및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양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33_ 1962~2015년 6월 누적치(신고금액 기준)가 1,512만 달러에 불과함.

수출통제

수출세 부과 및 수출통제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모래 30%,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40%, 천연고무 라텍스 1%, 쇠가죽 10%, 원목 10%, 보석류 15% 등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국산업에 원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부 광공업 생산품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다. 특히 ① 석탄, 우라늄, 토리움은 지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탐사권의 경우 총 탐사비용의 50% 이상의 자기 출자비율이 요구되며, 탐사 기간 연장 시 기존 허가 받은 탐사지역의 30%를 정부에 반납해야 되며, ③ 채광권의 경우 연간 전체 채광량은 원석을 기준으로 3,000m³를 초과할 수 없고, 채광권 취득 후 12개월 내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서가 회수되며, ④ 모든 광산개발 사업자는 베트남 환경보호법에 근거, 채광 사업 중 또는 종료 후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기 승인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근거, 의무적으로 환경보호 기금을 마련해야하는 등 베트남은 2012년 2월부터 광물의 수출, 탐사, 개발, 가공, 사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60/2010/QH12)과 2012년 3월(15/2012/ND-CP) 공표한 새로운 광산법과 시행령에 따라 각종 광물의 채광면허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① 석탄은 국가 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탐사 및 채광면허를 발급하며, ② 금은 금맥일 경우에 한해 허가가 고려되며 세부 가공공정, 신기술 사용, 환경오염 방지를 전제로 해야 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수입규제

자동차 수입허가제

현재 베트남은 외국산 자동차(HS 8703, 9인승 이하 차량)의 수입에 있어 반드시 해외 자동차 생산자가 공인하는 딜러에 의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딜러들은 베트남 정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과거에 베트남에 자동차를 수입했던 딜러들은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해외자동차 생산기업의 딜러인증 관련서류 획득 절차가 매우 어려워, 동 제도가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수입 승용차나 트럭 등에 대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 왔으며, 이미 체결한 FTA에서 자동차를 모든 관세양허 및 철폐 계획에서 제외시키거나 민감품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완성 자동차 수입을 규제해 오고 있다. 한-베 FTA에서도 자동차 부품의 관세 인하는 포함되어 있지만, 완성 자동차는 3,000cc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입 금지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제품

베트남은 2013년 11월에 발표된 자국 법령(Decree 187/2013/ND-CP)을 통해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총기류, 산업용 전구물질,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물 전구 화학물질 등이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사전 수입허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금, 담배 원료, 가금류 알, 정제 및 비정제 설탕의 경우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동수입허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2015년 6월에 발표된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CT)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72류와 73류)에 한해서만 자동 수입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동 수입허가제 시행으로 수입 허가신청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사전 수입허가제는 여전히 한국의 대베트남 철강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고기계 수입 관련 신(新)시행령 현황

2013년 8월 베트남 정부는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총리 명의의 행정명령(Directive No.17/CT-TTg)을 시행하여 품질 미달인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품질의 기계 설비를 수출하는 한국, 일본, EU, 미국산 제품의 수입이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시행규칙(Circular No. 20/2014/TT-BKHCHN)을 제정하여 기계 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5년 8월에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시행규칙의 개정은 중국산 중고 기계를 주로 수입하는 베트남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들의 낙후된 기계 사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고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의 중고기계 수입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여 국영기업들에 대한 수입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통관

HS 코드 세부분류 비일관성으로 인한 애로

베트남 현지진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의 시 베트남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코드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코드로 분류되기도 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한 바, HS 코드의 비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복잡하고 낙후된 통관절차 및 부정부패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 통관 절차와 관련된 결정서(Nos. 509/QD-BTC, 510/QD-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였으나,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제기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으로는 △세관 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납부의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으로 대응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도와 법규가 미비하여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 또한 △세관 또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 △만연한 부정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렇게 베트남의 통관절차는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13년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통관 지연을 야기한다. 둘째,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각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없어 절차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셋째,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 등 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입장에서 갖추지 못하였다.

원산지규정

FTA 원산지증명서 인정 애로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수출입관리실 및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관리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ASEAN FTA 규정에서 원산지 발급 기관은 회원국의 소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세관은 발급기관이 다르다며 우리 세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산지증명서의 직인색깔, 포장단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직인이 파란색인 경우가 많으나, 베트남은 대부분 빨간색 도장을 사용하여 세관원에 따라서 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명서 인정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한 인보이스상의 포장단위와 원산지 증명서상의 포장단위가 상이한 경우 총 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의 과도한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부담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이의 제기 및 시정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조달

건설 입찰에서 차별적 관행

베트남 정부조달 시장은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정부조달시 오직 자국산 물품이 조건에 맞지 않거나, 자국 내에



물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만 국채입찰을 시행한다.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예산 프로젝트는 입찰이 관례이며, 원칙적으로는 베트남 국내외 기업 모두 입찰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트남 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독입찰 보다는 현지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 구매에 있어 원산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 관련 정보제공의 경우 의도적으로 특정업체에게 이루어지거나 최초 입찰 공고 공개 시점부터 입찰시점까지의 시일이 상당히 짧아 사전에 입찰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업체는 사실상 입찰 참여가 어렵다.

경쟁정책

베트남 내 사업 기반이 없는 외국인의 직거래 금지

베트남은 자국 법령(Decree 90/2007/ND-CP)과 시행규칙(Circular 28/2012/TT-BCT)을 통해 외국인의 베트남 상품 수출 및 해외 수입품의 베트남 내 유통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베트남에 사업 기반이 없는 외국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베트남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신이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을 베트남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법규에 따라 수출입 사업자등록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직접적인 상품 거래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사업자 등록, 수출권, 유통권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베트남인 중간상인을 통해서만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 이러한 규제는 자금과 경쟁력이 없는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오히려 시장의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외국기업,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

중저가 화장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와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제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³⁴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각국 식약청에 개별 등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판매 제품을 해외시장에 얼마나 빨리 출시하느냐가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국내에서는 단종된 모델을 해외로 판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 내 정품과 구분이 어려운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는 화장품 제품 수입 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제품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제품등록신청서(Cosmetic product proclamation report), 업체·개인의 사업등록 인증서 사본, 제품 생산자 혹은 소유주의 위임장 원본 혹은 공증사본, 제조자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시험성적서, 성분분석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화장품 제품 등록증 번호를 베트남 관세청에 제출해야 최종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한편, 베트남 세관은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국민에게 잠재 수요가 높은 고가의 화장품 등 고가제품에 대한 통관 규정 강화와 세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4_ 여타 국가에서는 통상적인 등록기간이 1개월 내외인데 반해 베트남에서는 등록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서비스 · 투자 장벽

증액투자 시 기존 투자인센티브의 까다로운 적용조건

베트남 법인세 관련 규정(No. 32/2013/QH 2013)에 따르면 고정자산 증가(장비신설), 전체생산량 증가 등을 통해 사업 확장을 도모할 경우에만 기존 법인세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는 ① 사업확장을 통한 추가 고정자산이 최소 200억 베트남동에 이르는 경우(낙후된 지역 제외), ②추가 고정자산(기계/장비)의 비율이 기존 고정자산 비율의 최소 20%에 이르는 경우, ③전체 생산량이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투자자는 사업확장이 상기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법인세 관련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

베트남 투자법 및 기업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 중이다. 기존 베트남 투자법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허가신청서(Investment Certificate, IC)만 획득하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신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투자법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등록허가(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기업등록허가(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로 분리하여, 두 번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국인 지분 51% 이상인 기업은 프로젝트 등록 허가과 기업 등록허가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 지분 51% 미만의 기업은 국내기업으로 간주되어 기업등록허가(ERC)만 있으면 된다. 이는 기존 투자허가서(IC)의 경우 발급되었더라도 기업이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등록허가서 발급 후 기업 등록 허가를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기업등록허가서는 한국의 사업등록 허가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하이테크 인증기업 제도 유명무실화

베트남은 하이테크 인증 기업 제도에 대해 정부의정서 및 시행령³⁵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산업수준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기업들이 하이테크 분야에 투자할시 인센티브 지원 약속을 골자로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 수입 발생 연도로부터 연속적으로 최초 4년간 면세(이후 9년간 감세 50%), 부가가치세는 기술개발 및 과학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국내생산 불가 기계설비에 대해 세율 0% 적용, 수입세는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국내 미생산 원부자재, 부품에 대한 면세 조치 등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하이테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심사 및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그 기간도 최초 법인 설립 후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반 기업이 하이테크 인증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초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베트남 또는 외국 투자기업을 합쳐 약 20여 개 사 만이 관련 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한국기업은 전체 투자기업 4459개사 중 5개사 정도만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초과근무 수당 산정을 위한 기본임금 계산법 변경에 따른 부담가중

베트남 정부는 임금관련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LĐTBXH³⁶)에 따라 초과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대해 다시 정의를 내렸으며, 이때의 기준 임금은 ‘실제 지급 임금’ 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기본급 최소화+수당)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 역시, 기본급이 아니라 실제 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는 등 과거보다 실제 고용비용은 15~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35_ 하이테크 개발 우대 제품에 대한 안내 및 시행령, 투자기업 하이테크 사업분야 인센티브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시행령

36_ 2015년 8월 8일 이후 시행됨.



베트남의 외국영화 배급 차별 및 투자허가서 발급 지연

1986년 이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베트남 영화산업에도 민간 진출이 이루어지며 시장 환경과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영화시장은 여전히 국영기업의 점유율이 높으며, 이념문제로 인한 검열과 불규칙적인 정부 간섭이 영화산업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흥행성 있는 한국 영화의 개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 BCC (Business Corporation Contract) 계약서를 근거로 베트남 내 투자허가서(IC)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정 발급기간은 15일이나 실제 45~60일 정도가 소요되어 계약은 완료하였으나 송금이 되지 않아 제작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의 방송 프로그램 규제

베트남은 별도의 방송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행정명령, 언론법 등 다양한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실시된다. 방송 프로그램은 공산당 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오락물에도 정치적 정보 및 높은 수준의 예술과 교육이 담겨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이 자국 콘텐츠로 편성되어야 하며 외국 프로그램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한류 방송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지속적인 콘텐츠 수출을 위해서는 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저작권 보호 미흡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저작권료 지급과 관련된 지재권 시행령을 2015년 4월 15일 공포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내 저작권 보호 수준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현지 소비자들은 불법이라는 인식없이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불법복제 CD 판매부터 불법 다운로드까지 광범위하게 애용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우리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지적권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 많은 콘텐츠가 현지에서 무료로 범람하고 있는데, 이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를 방증하는 반면, 우리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하는데 여러 애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지 관계자(유통업자·가수·음반 회사 등)와 저작권 및 수익금, 현지 유통망, 온라인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맞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저작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위조품 만연

베트남 위조품 방지 및 상표권 보호협회(VATAP, Viet Nam Association for Anti-Counterfeiting and Trademark Protection)에 따르면 베트남으로 반입되는 위조품 생산 및 유통 방식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화장품, 맥주, 청량음료, 주류, 과자류 등 건강과 직결되는 식음료부터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분야의 위조품이 광범위하게 제작돼 유통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안경시장은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베트남 국내에서 거래되는 안경의 80% 정도가 위조품으로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국의 불시점검 결과, 많은 안경매장에서 중국산 제품을 일본 및 한국 제품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산 위조품이 장악하고 있는 안경시장에서 제품보증서 첨부 등으로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산 위조품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 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기준 양국간 상품 무역액은 186.8억 달러로 전년대비 5%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상품 수출입액은 각각 75.8억 달러와 111억 달러이며, 무역수지는 35.2억 달러 적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12.8%), 반도체(10.3%), 평판 디스플레이(7.8%), 동제품(5%), 철강관(4.7%)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28.8%), 석유제품(13.8%), 반도체(10.9%) 등이다.

말레이시아의 대한국 투자(1962~2015년 3분기 누적액, 신고금액 기준)는 총 75.1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 유치액의 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OFDI는 1968~2015년 3분기 누적액(실투자액) 기준 48.4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1.6%를 차지한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간에는 한·ASEAN FTA가 발효된 상태이며, 2015년 현재 RCEP 협상을 추진중이다.

수출통제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말레이시아는 원자재의 단순 수출을 억제하면서 원자재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팜원유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³⁷

37_ 관세법1967과 관세법령(팜오일 가치) 2013에 의거함.

팜원유에 대한 수출세 부과 기준이 되는 톤당 가격과 수출세율은 매월 고시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수출세 부과 최소 가격은 2,250달러/톤이며, 이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가격대에 따라 4.5~8.5%까지의 수출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팜원유 수출세 부과로 인해 팜원유를 수입해 사용하는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제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수입신고 전 수입제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허가면허(Import Permit License) 취득이 요구된다. 특히 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한대상물품은 식품(food products), 중장비(heavy machineries), 복사기(photocopy machines), CD제조기(compact disc makers), 마그네틱테이프(magnetic tapes), 철(iron steel) 등 총 33개 품목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이 동 수입허가면허 발급이 필요하여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입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수입면허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수입허가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만 취득할 수 있어 국외소재 기업은 취득할 수 없고, 수입허가면허의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품목마다 달라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수입허가 관련 사항은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 법³⁸에 따라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관할한다. 또한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38_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을 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로 관련 서류는 MITI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 수입허가제

말레이시아는 자동차³⁹를 수입할 경우 AP(Approved Permit)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면허를 발급하는데, 특정 조건은 △기존의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 할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완성차 업체의 프랜차이즈,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 출전을 위한 수입 등의 조건을 말한다. 또한 AP는 연간 신규차량 등록대수의 10%선으로 제한되어 연간 5~6만대 정도가 허용되고 있다. AP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P)에서 철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장(Open AP(중고차용) 2015년, Franchise AP 2020년)하였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AP 제도는 일종의 수입할당제로 대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제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70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총 3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부과 45개국 중에서 18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39_ HS 품목코드 8704.10 211, 8704.10 212, 8704.10 311, 8704.10 312, 8704.23 210, 8704.23 220, 8704.32 210, 8704.32 220, 8704.90 210, 8704.90 220

우리나라에게 말레이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12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 호주, 중국, EU,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캐나다에 이어 11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총 7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인도, 중국, 호주,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EU,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10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나라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게 10위의 수입국이다.

말레이시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원심)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가 전무했으나 2014년 이후 제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제품에 조사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고위관계자는 2014년 10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덤핑조사 신청의 증가세가 향후 수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대외적 요인 외에, 대내적 요인으로는 말레이시아산 철강제품의 경쟁력이 최근 들어 더욱 약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에 이어 철강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나, 전기로 방식의 생산시설에 한정되어 품질이 떨어지는데다, 최근 스크랩 가격 상승으로 고로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말레이시아 철강업체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게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15년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3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3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강철 선재, 전기도금 양철,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이다. 강철 선재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0일, 전기도금 양철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6일,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14일 각각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17일 조사가 개시되어 2015년 3월 11일 최종판정에서 14.91%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다.

말레이시아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기업의 상품은 열연코일, 콘크리트 강화 철근,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열연코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Megasteel사의 조사신청으로 2014년 6월 18일 조사가 개시되어 10월 17일 예비판정에서 3.15~29.37%의 덤핑률이 인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14일 최종판정에서 수입량이 미소하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지 않았다. 콘크리트 강화 철근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Ann Joo Steel사의 조사신청을 하여 2014년 9월 2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1월 30일 미소마진과 산업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냉연 스테인리스 스틸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국내업체인 Bahru Stainless사의 조사신청으로 2015년 4월 28일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2015년 9월 산업 피해 부정판정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

말레이시아는 2011년, 2014년, 2015년에 각 1차례씩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2011년에는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과 없이 조사가 2011년 8월 22일 종결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재압연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2014년 8월 14일에는 열연 강판(Hot rolled steel plate)⁴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11년 257,591톤에서 2012년 292,238톤으로 13% 증가했고 2013년에는 367,172톤으로 26%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5년 6월 30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2015년 7월 2일부터 1년간 17.4%의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후 1년 간 13.9%, 그 이후인 2017년 7월 2일부터 1년 동안은 10.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열연강판 중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후판(두꺼운 강판)의 수출량은 2011년 47,596톤, 2012년 45,307톤, 2013년 70,965톤, 2014년 47,213톤이었다. 말레이시아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2017년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후판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 11일에도 2011년과 같은 열연 코일(Hot-rolled coils)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가 개시되었다.⁴¹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에 따르면 2012년 69만4,305톤에서 2013년 80만7,647톤으로 16% 증가했고 2014년에는 89만8,023톤으로 11% 증가했다.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는 앞서 이루어진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이 있다. 말레이시아 조사당국은 2014년 6월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2015년 2월 최종판정에서 중국산과 인도네시아산에 대해 2.49%~25.4%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산은 미소물량으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더 이전인 2011년에도 열연 코일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신청이 있었지만

40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51.000, 7208.52.000, 7225.40.000임. 열연강판 제품은 가전 제품, 자동차, 선박 제조 등에 사용됨.

41_ 조사대상물품은 HS code 7208.36 000, 7208.37 000, 7208.38 000, 7208.39 200, 7208.39 900, 7225.30 000임.



말레이시아 내의 재업연사들의 반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일련의 조사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기업은 말레이시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를 보유한 Megasteel사이며, 연간 열연코일 3,200만톤과 냉연코일 1억4,50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관련 외국인 입찰 참여 제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산업의 발전과 말레이계 기업 육성을 위해 자국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구매제도는 자국의 소재 및 자원 이용을 극대화 하여 자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 부미푸트라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현지 업체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의 건설산업개발위원회가 발행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건설업 면허는 현지인 지분 70%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입찰 및 낙찰과정도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변혁프로그램(ETP)을 추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건설 시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국기업 우대 정책⁴²과 불투명한 조달체계로 인해 말레이시아 현지 입찰 참여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서도 정부조달시장은 미개방인 바, 위와 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요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러나 최근 타결된

42_ 말레이아 국제입찰 중 10만~1500만 링깃 규모의 조달의 경우 부미푸트라 기업에게 2.5%~10%의 특혜 세제를 부여함.

TPP에서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바, 향후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말레이시아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진출장벽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기업만 가능한 Petronas 벤더 등록

말레이시아 Petronas(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공급 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을 파트너로 발굴하거나 말레이시아 지분이 포함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을 에이전트로 지정하고 이 에이전트가 Petronas에 벤더로 등록되거나 Petronas로부터 제품 납품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벤더로 등록하거나 라이선스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품목별 서비스별로 말레이계 지분 참여율이 정해져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서비스 · 투자 장벽

유통업 사업면허 발급 지연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이 유통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소매·무역업 면허(WRT)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동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납입 자본금 요건(100만 링깃(약 3.2억원))을 충족해야 하고 요구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면허 취득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외국 기업이 말레이시아 WRT 면허를 신청할 때 말레이계 지분의 참여가 낮다는 이유로 면허의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외국 기업에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 운영 면허를 발급할 때 말레이계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타

자동차 특별소비세 부과 내외국업체 차별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에 특소세(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활동 비율에 따라 특소세를 환급해주고 있어 외국산 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는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말레이시아 자국 자동차 브랜드(Proton, Perodua) 및 자국 내에서 조립된 자동차 대비 가격이 월등히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소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수입방식(CKD, CBU)⁴³에 따라 60~105% 부과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자동차 브랜드에 비해 우리 자동차 브랜드들이 내야하는 높은 특소세는 현지 진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 관련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수입산 부품을 꺼리게 되어 완성차 뿐 아니라 현지 자동차 공장으로의 부품 수출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43_ CKD(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 CBU(Complete Business Unit): 완제품

인도

2014년 기준 한·인도 상품 무역액은 180.5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입액은 각각 127.8억 달러와 52.7억 달러(총 상품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 1.2%)이며, 상품 무역수지는 75.1억 달러 흑자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도 주요 수출 품목은 중화학공업품(43.62%), 화공품(10.59%), 철강제품(10.26%), 전기·전자제품(9.93%), 기계류와 정밀기기(7.4%) 등이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1962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5.7억 달러(전체 IFDI 중 0.4%)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OFDI는 1968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누적액(실투자액 기준)이 약 38억 달러(전체 OFDI 중 1.4%)이고, 이 중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83.6%이며, 그 외 유통(6.3%), 금융·보험(1.1%)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인도간 CEPA는 2010년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2015년 현재 RCEP 협상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수입규제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인도는 중고차량 수입 시, 중고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운전자석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뭍바이 세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자동차배기량이 3,000cc를 넘어야 한다(중고차량 1000~2500cc 전면 수입금지,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500cc 수입가능,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 수입가능하나 800cc를 초과할 수 없음). 특히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수출 및 선적 전에 완료해야 한다. 동 법안으로 인해 중고차량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하던 기업들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 등으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수출이 전무한 상태이다.

통관

자의적인 통관 시스템

인도의 통관시스템은 현대화되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통관 에이전트와 세관 공무원 간의 관계가 관세 및 통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능한 통관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즉, 구매자에게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현지 상사에 대한 수출이건 통관 업무는 현지 통관 에이전트(Customs Clearing Agent)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 세관에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며,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도 행정은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고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이 큰 편이며, 통관 역시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처리로 인해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Invoice 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 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매긴다거나,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밖에도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제품 조달과 관련해서 이전가격의 조정을 이용한 법인세 과소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과 관련된 각종 증빙을 수시 및 임의적으로 세관에서 요구하는 등 통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불투명한 통관 행정절차

인도는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서류상 단순 기재오류 등 작은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되며,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으로 행정절차가 항상 불투명하다. 또한 세관 간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항구 하역 설비의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행정상 부당하거나 부정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수출품에 대해 구매자가 구매거부 시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재반출이 가능한데, 구매자가 NOC 작성을 미루고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내용물을 비운 컨테이너를 선사에 반환해주지 않고 오히려 초과정박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추가적으로 인도에서는 주 경계 통과시 추가 판매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에 판매를 추진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업체의 가격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 화물 통관 지연

일반적으로 각종 기계류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미보유한 AS 부품에 대해서 수입이 시급한 경우가 많아 항공 운송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항공운송의 경우 물품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통관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선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도 각종 사유로 인해 항공 화물 통관이 지연된다.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지거나 보완이 요구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도 있으며, 담당자가 부재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허용된 72시간 이내에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조사 및 관세 부과

인도는 1995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나라이다. 무려 총 740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534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함으로써 2위국인 미국의 527건의 조사 개시 및 345건의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에 비해 그 격차가 상당하다. 사건의 수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가 반덤핑 조치의 부과로 이어진 비율이 미국은 65% 수준인 반면, 인도는 72% 수준인 것으로 볼 때, 인도는 미국 이상으로 반덤핑 중심의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기업이 수출한 상품에 대해 총 56건의 조사를 개시하여 총39건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인도에게 우리나라는 비록 11대 수입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을 위한 상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스위스, 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의 5번째 수입 상대국이다.

인도는 201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 총 1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원심을 기준으로 총 8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아크릴단섬유, 아크릴로나이트릴부타다이엔고무, 가성소다-3, 폴리올(Flexible Slabstock Polyol)-2, 나일론필라멘트사, 탄산칼륨, 아세톤-2, 석유화학 첨가제(Rubber Chemicals), 인산, 600~1250mm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PVC 수지(PVC paste Resin), 프탈산무수물(Phthalic Anhydride), 폭 600mm 이하의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메틸렌 클로라이드, 질산나트륨, Cast Aluminium Alloy Wheels, 고순도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스테인리스 열연강판이다.

인도로부터 반덤핑조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은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Cast Aluminium Alloy Wheels, 질산나트륨, USB flash drives, 고순도테레프탈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쓰리즈, 페놀, 2-에틸헥산올(2-Ethyl Hexanol), 카본 블랙(Carbon Black)이다.

이 중 카본 블랙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당국이 2015년 11월 예비 판정에서 조사를 종결했다. 조사를 받던 우리 기업은 매년 카본블랙 수출량을 늘려왔으며 수출액은 지난 2011년 1300만 달러에서 2014년 3075만 달러(약 300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카본블랙은 타이어, 고무 등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로 쓰이는 탄소 분말이다.

또한 600~1250mm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해서 인도의 반덤핑 조사 당국은 2015년 11월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한국 업체에는 5.39~13.44%의 덤핑마진이 부과됐으며 대만에는 15.93%, 미국에는 29.41%, 태국에는 4.58~5.39%, 남아공에는



12.34~36.91%의 마진이 산정됐다. EU에는 29.41~52.56%, 중국에는 57.39%의 고관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는 지난 2009년 이들 국가의 제품에 대해 덤핑혐의를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이 조치가 지난 4월 만료됨에 따라 재심 조사를 개시하여 이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가장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나라이지만 미국, EU,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담당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반덤핑 조사가 충분히 자세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투명성의 부족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긴급수입제한

인도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3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9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도는 4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며, 2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은 구연산나트륨, 포화지방알콜, 무용접강관, 디옥틸 프탈레이트이다.

구연산나트륨(Sodium Citrate)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6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55%, 2년차 50%, 3년차 4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포화지방알콜(Fatty Alcohol)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9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6개월간) 12%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다.

무용접강관(Seamless Pipes, Tubes and Hollow Profiles of Iron or Non-alloy steel)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1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6개월간) 5%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디옥틸 프탈레이트(DOP, Dioctyl Phthalate)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16일 최종판정에서 1년차 15%, 2년차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되었다.

인도로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품은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 연강판, 이상 2건이다.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non-alloy and other alloy steel with a width of 600mm or above)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9월 7일 개시되었다. 인도 조사당국에 따르면 해당 상품의 수입량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5%, 2015년부터 2014년까지는 13%가 증가하였다.

두께 150mm 이하의 평판 열간압연강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가 2015년 12월 7일 개시되었다.

특히 너비 600mm 이상의 평판 열간압연강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 부과를 위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인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당국은 2015년 9월 14일부터 200일 동안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긴급 수입제한조치(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2015년 9월 9일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다. 이후 잠정조치가 취해져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가 우려되었으나 우려와 달리 감소폭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오히려 인도의 철강 수입량은 작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인도 내 철광석, 석탄, 가스 등 철강 원자재의 가격이 수입국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 인도의 적정가격은 1t에 15~20달러이나 실제 가격은 45~60달러 정도이고 제품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운송비를 더하면 인도 철강제품은 수입 철강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인도의 열연코일의 최종 판매 가격은 약 500달러인 반면, 중국산 열연코일의 판매가격은 관세를 더해도 43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코트라 뭄바이무역관에 따르면 인도 철강업체가 열연강판에 이어 냉간 압연강제품에 대해서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냉간압연강 제품을 인도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상황을 파악하며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타이어 인증제도

인도는 자동차용 타이어·튜브 품목의 품질, 안전,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인도표준국(BIS)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인증 마크를 타이어에 각인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규격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증비용 이외에도 ISI 각인이 있는 모든 타이어 제품에 대해 생산량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표준국의 인증방침(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만 은행보증료(performance bank guarantee)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마크 수수료, 해외 공장에 대한 은행보증료 제도 등이 부재하여 인도 기업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중고 타이어를 인도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품 타이어를 수출할 때 필요한 BIS인증 이외에 인도 환경부, 인도 상공부의 허가 등 수많은

절차와 인증을 필요로 한다. 즉, HS Code 4012.11.00-4012.20.20 까지에 해당하는 중고타이어 품목은 대인도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뿐 아니라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타이어에 대해서도 인증마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국제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철회 및 인도 수출용 ISI 각인 타이어에만 부과해 줄 것과, 공장별 은행보증료(미화 1만달러)를 인도내 공장에도 부과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5년 6월 우리 정부는 동 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고, 그간 우리 업계도 동 규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 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서 더 이상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인증사용료 및 은행보증료 관련 요금이 과도하여 인도 측에 비용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일본, EU 등과 인증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인도 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등록 절차

화장품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입을 관리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수입되는 스킨, 헤어, 네일 등 모든 화장품은 2013년 4월부터 중앙약품표준통제국(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워 대인도 제품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입되는 제품이 인도 현지에서 재포장 또는 재가공 되어 해외로 100% 재수출되는 경우 해당 의무 등록절차는 면제되나, 제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한 후 현지 시장에 판매할 경우에는 의무 등록이 필요하다. 현지에 법인, 연락사무소, 지사 등이 있는 해외업체의 경우 직접 CDSCO에 등록이 가능하나 인도 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업체의 경우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고 1회 등록시 약 2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승인 발급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 이외 수입업자나 에이전트를 교체할 경우 새로운 수입업자 또는 에이전트가 CDSCO에 신고해야 하며, 유효 기간은 3년 및 연장신청은 만료 9개월 전에 해야 한다.

전자 및 IT제품 의무 등록 요건

인도는 ‘전자와 정보기술상품 명령, 2012 (Electronics and IT Goods Order, 2012)’을 WTO에 통보하였으며, 이는 모든 통보된 제품이 사람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해 인도 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안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제는 IND/47로 통보되었던 인도 전기전자 및 IT 제품에 적용되는 BIS 의무등록제도이다.

인도는 2015년 9월 1일 발표된 BIS 의무등록제도 관련 시리즈 인증 가이드라인 개정 4본에 따라 2차 전지와 고정형 LED 전구에 한하여 시리즈 모델 수를 증가시켰다. 이에 따라 2차 전지는 시리즈 당 최대 허용 모델 수가 20개이며, 고정형 LED 전구의 경우 50개로 제한적이다.

또한 2015년 10월 20일 기준 2차 전지(IS 16046) 시험이 가능한 현지 시험소는 총 5곳이며, UL India의 경우 2015년 8월 18일 자격정지된 후 아직까지 원상복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 6월 WTO TBT 정례회의 개최시 양자협의를 통해 2차 전지 시험소로 지정된 곳 중 1곳의 자격 정지로 인해 우리 기업의 2차 전지 시험 및 인증에 큰 애로가 있음을 밝히고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하였다. 인도 측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6개 품목(IT 기기용 파워 어댑터, 오디오/비디오용 파워 어댑터, UPS, LED 모듈, 2차 전지, 고정형 LED 전구 등)에 한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철강제품

2012년 9월부터 일부 철강제품⁴⁴을 인도에 판매(수출)하기 위해서는 표준국의 BIS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도에 유통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및 수입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BIS 인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인도에 설립하는 등 인도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가능하다. 이외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 BIS 인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해당 현지 업체가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업체와의 법적 계약 관계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신청 → 검토 → 공장방문(설비조사)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의 순으로 진행되는 인증서 발급은 일반적으로 10개월이 소요되어 발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인증서 발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근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17일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장강(long steel), 평강(flat steel) 등 일부 철강 품목에 한해 수입관세를 2.5% 인상한데 이어, 불과 2달 뒤인 2015년 8월 해당 품목들에 대한 수입관세를 재인상한 상태이다.

서비스 · 투자 장벽

세금 관련 규제

인도는 법인세율, 소득세율, 관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세금을 다 납부하면 수익을 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많다. 한편 인도 정부는 외국

44_ BIS 인증번호가 2002, 2041, 2830, 1786, 648, 15391, 2062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

기업이 자국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인도에서 받고 있는 각종 지원(주택 임차 등)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어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의 법인세율은 법인의 경우 31%~34% 수준이고 지사의 경우에는 41%~42% 수준이다. 이 밖에 소득세율은 대부분의 경우 30.9%이고 관세율은 약 26%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높은 조세율 이외에도 복잡한 조세체계 및 납부방식, 세금 환급의 어려움, 불필요한 행정 처리, 빈번한 세법 및 관행 변경, 조세 당국의 고압적 자세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수출 위주의 기업이나 특별경제구역(SEZ)에 입주해 있는 기업, IT 파크 등 특정 지역 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약 10년간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들 지역 또는 기업으로는 개별 공고된 특정주(notified states) 및 낙후지역(backward districts) 입주 기업, 전자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lectronic Hardware Technology Parks, EHTPs) 및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s) 입주 기업, 100% 수출기업(Export Oriented Units, EOU) 및 수출가공구역(EPZ) 입주 기업, 특별경제구역(SEZ) 입주업체 등이다. 또한 인프라 시설(도로, 고속도로, 공항, 항만, 철도, 상수, 관개, 위생 및 하수설비 등)의 개발, 보수, 운영 관련 기업, 과학 및 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 활동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은행 서비스업 규제

2014년 11월 초 현재 43개의 외국계 은행이 310개 이상의 지점 설립을 통해 인도에서 영업 중이며, 45개의 은행이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다.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산업의 총자산 중 6%, 부외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으며, Standard Chartered, HSBC, Citibank은 인도 진출 외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세 은행으로 각각 101개, 50개, 42개의 지점을 두고 기업 및 개인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바, 최근 몇 년 사이에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과 같은 몇몇 큰 투자은행들은 영업면허 취득 계획을 포기하였으며 Barclays와 RBS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매금융을 철수시켰다. 또한, 하나는은행은 외환은행과의 합병 후, 하나의 금융지주사가 두 개의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인도 규제에 따라 2013년 초 뉴델리 사무소를 폐쇄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증대,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지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한-인도 CEPA 규정 중 CEPA 발효 후 4년에 걸쳐 우리나라 은행의 인도 지점 10개 설치를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인도 현지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텔리, 뭄바이, 벨로르, 푸네에 지점을 두고 주로 우리 진출 기업 및 교민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2012년 4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 2015년 하반기 구르가온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개설하면서 인도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고 이다. 또한, 수출입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이 뉴델리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외환은행은 2014년 3월 첸나이에 지점을 개설한 상태이다.

인도 정부는 2005년 2월 외국은행 진출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presence of foreign banks in India)을 발표하였는데, 외국계 은행은 지점이나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WOS) 중 택일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 로드맵은 2009년 3월 이후 인도 금융 산업 변화 상황을 검토하고, 외국계 은행에 대한 규제 및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계 은행의 인도 진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리스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도중앙은행(RBI)는 국내 금융 산업을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자

외국계 은행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인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외국계 은행은 인도 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 외국계 은행은 인도 은행과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되어 인도 내 지점 설립 및 운용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외국계 은행들의 농민 및 빈민에 대한 대출 확대 및 인도 정부가 정한 15개 우선지원분야 의무 대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진출해 있는 은행들의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및 경영 구조 재편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또한 만만치 않아 현재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한국과 러시아의 상품무역은 1992년 1.9억 달러로 시작하여 2011년 수교 이후 최초로 2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4년 25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상품 수출입 규모는 각각 101.2억 달러와 156.6억 달러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EU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루블화 가치를 비롯한 경제지표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인해 대러 수출은 하락세,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러시아와의 무역수지 적자는 55억 달러에 달하였다. 2015년 상반기에는 기록적인 루블화 가치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의 연장으로 교역수지 적자는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제 회복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러 수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칼라 TV,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 중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은 2014년 말 기준 전체 수출의 37.6%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 및 자원 중심이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천연가스, 알루미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다.

양국간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2015년 9월말 기준(누적액, 신고기준) 1.9억 달러로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2015년 9월말 기준 누적액이 22억 달러(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 0.7%)이며, 주요 투자 업종은 제조업(59.9%), 유통업(9.7%), 농림어업(7.6%) 등이다.



수입 규제

의약품 수입규제

러시아는 외국 의약품 및 의료물질의 수입 시 우선적으로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ROSZDRAVNADZOR(연방 보건감독청)에 제품을 등록하고 등록 심사와 임상실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상시험기간을 제외하고 210일 안에 등록심사가 결정되며, 서류 및 생산 공정 심사와 샘플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연방 보건감독청에 등록된 의약품만이 수입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처음 받은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고 그 후 갱신 시 인증은 무한으로 유효하다. 수입에 앞서 제품 등록 시 러시아 기술표준 인증(GOST-R)에 의거한 적합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 허가는 신청 5일 이내에 발행되도록 되어 있다.

통관

부당한 행정절차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비용 발생

러시아 관세법 체제 하에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통관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중개인 요청 우선 처리 등 부적절한 관행으로 한 달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세운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지역 관세청의 실적 채우기 등으로 인해 실제로 보세운송이 잘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수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는데,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서류가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서류가 100%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을 경우 통관이 안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러시아 세관은 수출자가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여 세관의 자체적인 기준가(guide lin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HS코드 상 동일 제품이더라도 지역 세관 또는 세관원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잦은 검사로 통관이 지연되고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지역 관세청에서 책정한 관세를 내고 통관한 물품에 대해 추후 연방 세관 당국이 재차 심사하여 추가 비용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러시아 정부는 통관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 통관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품 샘플 수령의 어려움

러시아 관세법 155조에 따르면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 분석을 위한 샘플의 경우 관세와 기타 세금을 일부 혹은 전부 면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샘플이나 전시회 물품을 직접 러시아로 들어오는 경우라도 공항세관에서 비일률적인 통관 관행, 관세법의 자율적 해석 등으로 인해 반입을 지연 시키거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한국에서 샘플을 러시아로 발송할 경우 보통 EMS, UPS, DHL, TNT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 세관 사무소에서 내용물에 대해 판매용 물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575 조의 “3,000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금지”라는 명목을 내세워 구매자에게 보내는 샘플에 대해 보류 또는 반송하는 경우도 있다.



냉장고 양허세율 위반

러시아는 냉장고 품목 7건⁴⁵에 대해서는 WTO 가입 양허세율을 상회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세⁴⁶ 적용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택세가 적용되는 5개 품목의 경우, WTO 양허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선택되어야 하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에게 러시아 수출시 부담인 동시에 러시아 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 문제가 개선된다면 관련기업의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

러시아는 2014년 7월 1일부로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제’를 발효하였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속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Union)는 ‘경공업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술규제’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러시아는 С а н П и Н 2.4.7./ 1.1.1286-2003, 카자흐스탄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 사항’, 벨라루스는 С Т Б 1049-97에 해당된다.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자국 생산자들이 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식수(‘15.3월), 의약품(‘15.8월), 식품(‘15.11월), 기계장비(‘15.12월) 등 각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5_ 8418.10-2001, 8418.10-8001, 8418.21-1000, 8418.21-5100, 8418.29-0000, 8418.40-2001, 8418.40-8001

46_ 종량세와 종가세를 동시에 결정하고, 그 중 높은(또는 낮은)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관세

CU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관세동맹 확립에 따라 러시아가 '93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던 국가표준규격인 GOST-R 인증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변환되었다. 2012년 1월 1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은 관세연합(Custom Union) 인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위원회는 역내 국가의 통합 인증체계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12월 현재 기계장비, 장난감, 화장품 등 약 66개 품목(세부규격 약 8천여 개)이 관세연합(CU) 인증으로 통합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 인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 난립(인증기관 948개, 시험대행기관 2,254개)으로 인한 부실 인증 서비스, 과도한 인증비용 지출 등 피해사례도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표. EEU 회원국별 인증기관 현황〉

구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합계
인증기관	5	54	79	2	808	948
시험대행기관	13	298	254	27	1,662	2,254

자료: EEC

정부조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

최근 러시아 정부는 내수 시장 보호와 자국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4년 엔지니어링 및 경공업 제품을 정부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법령을 발표한 것에 이어 2015년에는 의약품 소프트웨어 등도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



메니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외국에서 생산된 건설용 차량 및 부품, 차량 등 총 42종에 대해 러시아 연방 및 지방정부의 조달 구매가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된 섬유류(6종), 의류(7종), 신발류(3종) 등도 정부조달 구매가 금지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산 의료용 식물, 의료 장비, 각종 검사키트 등 총 45종,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 16종도 정부 조달 제한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관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어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표. EEU외 외국산 제품 공공조달 참여 제한 조치〉

발표일	내용	발표 부서
2014.7.14	건설기계 등 엔지니어링 제품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4.8.11	외국산 경공업제품 구매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1.31	엔지니어링 품목 추가 법령	산업통상부
2015.2.5	해외 의료용 제품 조달품목 제한 법령	산업통상부
2015.9	외국산 소프트웨어 조달품목 제한 법령	정통부

자료: 러시아 산업통상부

호주

한국의 대호주 상품 무역은 2011년 이후 수입이 점차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1월 양국간 무역 규모는 250억 달러이며, 대호주 수출입액은 각각 100.8억 달러와 149.5억 달러로 48.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36.93%)과 자동차(16.4%),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12.5%)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탄(29.1%), 철광석(20.7%), 육류(7.3%) 및 원유(7.3%) 등 원자재와 농림수산물이다.

한·호주 투자관계를 보면, 호주의 대한민국 투자액은 2015년 12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금액 기준)이 24.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IFDI에서 1%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호주의 대한민국 주요 투자 업종은 비즈니스 서비스(30.5%), 부동산·임대(21.4%), 금융·보험(11.7%) 등 서비스업 중심이며, 제조업에서는 의약(9.6%), 운송기기(2%)에 대한 투자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OFDI는 2015년 9월까지의 누적액(신고기준)이 175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OFDI에서 4.1%를 차지하는데, 대호주 투자 중 79%가 광산업에서 시행된 것이며, 그 외 부동산·임대(10.7%), 제조업(3.8%) 등이 주요 투자 업종이다.

한·호주 양국간 FTA는 2014년 4월 공식 서명되었고, 2014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그 외에 양국은 RCEP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는 2015년 10월 5일 타결된 TPP의 12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호주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기술장벽이나 여타 수입규제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간 까다로운 심사와 고비용으로 중소기업의 호주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기술인증이 RCM으로 통합되어 기술, 품질



및 안전인증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 다만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제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식품검역제도

호주는 해외로부터 질병 및 병충해 도입을 막기 위하여 엄격한 검역규정을 갖추고 있다. 농수산물 및 식품류의 검역은 Quarantine Act 1908에 의거하여 AQIS(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류는 AQIS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된 경우 실제 검역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빠른 검역통과를 위해서는 세부 사항이 정확하게 표기된 라벨과 편리한 포장 상태가 요구된다.

호주정부는 2010년 한국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한국산 육가공 제품을 현재까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식품검역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검역당국은 수입식품이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의 수입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 또는 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수입 통관의 취소, 지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식품 수출기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시장에서의 국내기업 우대조치

호주정부 조달 시장은 연간 약 40조원대로 추정되며, 해외구매도 약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매력의 큰 시장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나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한국 기업의 참여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호주정부는 정부 조달 입찰시스템(Austender) 신규 등록시 필요한 호주사업자등록번호(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기입을 필수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바꾸는 등 정부조달 시장을 현지 법인이 없는 해외 법인도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 등 각 부처가 정한 사전요건⁴⁷을 충족시켜야 하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국내기업 우대 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의 진입장벽은 IT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의 정부구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액의 10%, 소프트웨어의 경우 20%를 호주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외국 업체의 주정부 조달 입찰시, 국내업체 우대마진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일부 정부조달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이 자국 업체에 유리하도록 국제기준과는 달리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제소 및 관세 부과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289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반덤핑 조사 개시 49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어 6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2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 부과 45개국 중에서 인도, 미국,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9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부과한 국가이다. 2015년 10월 현재

47_ 호주 연방부처들은 ESA(Endorsed Supplier Arrangement)에 의거, 조달시장에 입찰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 산업표준요건 충족, 정부정책과 일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요건들을 만족한 기업들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총 18개국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주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총 33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인도,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총 19건의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여 인도,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호주 정부는 2015년 7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상품에 대해 총 8건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총 3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호주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고 있는 8개 품목은 열연 철강 구조물(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풍력 타워(wind tower), 후판(hot rolled plate steel), 아연 및 알루미늄도금 강판(zinc coated(galvanised) steel and aluminium zinc coated steel), 아연 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sed steel), PVC 수지(polyvinyl chloride homopolymer resin), 열연코일(hot rolled coil steel),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hollow structural sections)이다. 호주로부터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3개 품목은 철근(steel reinforcing bar), 열연 구조물용 철강 파이프(hot rolled structural sections), 변압기(power transformers) 등으로 철강제품에 조치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지원보다는 교역환경 개선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써 반덤핑 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반덤핑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일 반덤핑 담당 조직을 관세청에서 분리 하여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호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고 중국과도 FTA를 타결하면서 상당부분 관세를 철폐하였고, 이로 인해 호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등 주요 철강제품의 경우 주요 제품들에 대해 호주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발효되면서 대부분 즉시 철폐되었고 제외된 일부 품목도 5년 내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철강 시장을 두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강재를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규모는 2014년 기준 138억불(수출 89억불, 수입 49억불)로 우리나라는 40억불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브라질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브라질간 교역규모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브라질 수출이 전년 대비 52.5% 늘어난 11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동기간 수입은 34.6% 증가한 63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또한 전년대비 83%가 증가한 55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한 바 있다. 성장세를 이어오던 한-브라질 간 교역은 최근 3년 연속 하락(2012년 164억 달러, 2013년 153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교역액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경기침체 및 헤알화 환율 급상승으로 인한 교역여건 악화, 브라질 정부의 공업세(IPI) 인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환경 악화, 우리기업의 브라질 현지진출 확대에 따른 완제품 수출 감소 등이 주요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로 첨단기술을 요하는 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투자는 1995년 MERCOSUR 관세동맹 공식 출범 및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브라질의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199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 2014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누적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6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브라질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동국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23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브라질 정부의 각종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교역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투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규제

수입 허가 제도

1) 자동발급 수입허가(Automatic Import License)

브라질에서 수입신고 시 사전 통제 또는 특별 수입규제 품목외의 대부분의 품목은 자동으로 수입 허가서가 발급된다. 수입자가 수입 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품목의 수입허가 자동발급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다. 위생이나 환경 관련품 등 일부 제품은 수입허가 자동발급 품목에 속하더라도 통관 전 특별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별허가 요망품목에는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이 있으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천연 고무나 인조고무 외에도 유관기관에 사전등록이 필요한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등이 있다.

2) 자동발급 불가 수입허가(Non-automatic Import License)

수입허가 자동 발급이 불가한 품목들은 선적 전이나 수입신고 시 수입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원산지외 관계없이 인간 및 동식물에 위해하거나 환경파괴를 야기 시키는 품목, 수입 쿼터나 무역구제조치가 필요한 품목

또는 무기류 등이 이에 속한다.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사전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 열거 되어있으며, Drawback, BEFLEX, CNPq, ZFM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모두 사전수입허가가 필요하다.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 및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는 통상개발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해당 품목의 HS Code 및 사전 허가 발급기관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두 종류의 허가증은 모두 90일 동안 유효하며 16개 기관을 통하여 SISCOMEX에 직접 등록이 가능하고, 60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통관

화물검사 통관 지연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반입품을 녹색(자동 통관), 황색(서류심사 필요), 적색(서류 심사 및 화물 검사), 회색(서류 및 화물의 정밀 검사)으로 4가지 채널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브라질의 화물검사는 2012년 진행된 'Operacao Mare Vermelha'로 불리는 화물검사 강화 조치 정책부터 강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실행한 배경은 통관진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물요구를 근절하고 브라질내로 반입되는 화물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으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반입품의 채널 배정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반입품에 대하여 48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채널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는 180일까지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Operacao Mare Vermelha'는 공식적으로 2013년 초에 종료된 상태이지만, 다수의 업체들은 여전히 통관 지연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으며, 브라질 연방세무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통관 규정을 발표하여 화물 검사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추후에도 정부차원의 통관강화 정책이 사전예고 없이 발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브라질의 통관 절차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상적으로는 공인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사는 업체로부터 변호사가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받아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국제표준 불인정

국제 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인증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인증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장 신규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브라질은 도량형 및 품질관리기관인 INMETRO의 독자적인 타이어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및 IT 제품의 통관 시 브라질 지적재산권협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등록과정에서 지나친 정보공개 요구로 기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

브라질 정부 및 업체들은 최근 들어 품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반드시 강제인증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품질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브라질 국립기술 표준협회(ABNT)는 국내 각종 기술 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해 자격 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브라질은 2009~2013년 동안 782개의 표준과 359개의 기술규정을 도입하였으며, 그 중 53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립계량품질원(INMETRO)의 강제인증

국립계량품질원은 개발상공부 소속 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실제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이다. 각종 산업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기관이며, 인증 종류에 따라 OCS(품질시스템인증기관), OCP(제품인증기관), OCA(환경통제제도인증기관), OPC(인력인증기관), OTC(훈련기관) 등의 전문 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업체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에 영향을 주는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강제인증이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강제인증은 국립계량품질원(INMETRO)과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외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브라질과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을 통해 취득한 인증서의 내용도 인정한다. 아직까지 INMETRO와 우리나라 간에 MR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증서 인정은 불가능하다.

강제인증은 제작·유통·사용 과정에서 개인안전, 공중위생,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INMETRO가 규정하는 강제인증 요구 품목은 2008년 59개에서 2010년 81개, 2013년 110개, 2015년 150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⁴⁸ 우리기업 제품도 강제인증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브라질 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브라질에는 제품군별로 수십여 가지의 법령이 존재하며 법령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각 품목별 법령의 적합성평가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48_ 구체적인 강제인증품목 내역은 INMETRO 홈페이지 참조:
<http://www.inmetro.gov.br/qualidade/rtepac/compulsorios.asp>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품은 상업용이나 가정용과 관계 없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강제 규제된다. 인증제도는 크게 제3자 인증제도와 자기적합선언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에 따라 인증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제3자 인증제도의 경우 ①제품시험, ②공장심사, ③CCS(Customer Complaint Service) 확인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인증서는 반드시 INMETRO가 지정한 인증기관(OCP)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제도는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적은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반드시 브라질 현지의 INMETRO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이 가능하다.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은 제3자 인증제도로 법령 제371조에 의해 규제되며, IT제품은 정부조달의 경우에만 제3자 인증제도인 법령 제170조에 의해 규제된다. 특히 블렌더, 드라이기, 진공청소기의 경우 소음시험을 통한 소음라벨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IT(정부조달)의 경우 휴대용 컴퓨터와 데스크톱 컴퓨터는 에너지효율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규제 강제인증 대상품목으로는 가정용 전기기기, 정보사무기기(정부조달품), 가스기기(압력조절기 또는 호스), 스위치, 플러그, 콘센트, 밸러스트, 전선류, LED 램프 등이 있다.

유무선통신 인증

브라질은 「Resolution 242/20」에 따라 통신제품에 대해 반드시 ANATEL (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인증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인증대상 품목군은 ANATEL이 지정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품목별로 기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ATEL 인증은 브라질 내 유통업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하며, 대리인은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수행가능하다.

통신기기 인증은 제품시험을 통한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서 발행 후 ANATEL에 최종 등록해야 완료되며, 시험은 ANATEL로부터 지정된 시험소에 의해 서만 수행가능하다. ANATEL 제품 승인을 받은 모든 제품은 바코드가 포함된 ANATEL 로고 및 인증번호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경쟁정책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 규정

브라질은 암암하층 개발 사업에 대해 자국산 부품 의무사용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국산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은 60~90%이며 특히 브라질 내에서 물품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90%까지 자국산 품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 조선기업의 브라질 조달시장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브라질 시장 내 경쟁감소로 R&D 투자는 감소하고 가격은 증가하며, 자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은 떨어지는 등 브라질 조선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선박제조가 지연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유전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져 유전개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투자를 통해 자국산 부품 의무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현지진출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조선업체는 사실상 브라질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조달

정부조달 시장 제한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공조 없이 외국 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브라질 법률 제8666호(1993년)에서는 IT제품을 제외한 상품조달에 있어 국내외 기업에 대한 비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와 관련기관들은 각종 입찰시 실제 국산품 구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P, margins of preference, 대통령령 7.546/2011)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별 MP 적용 기준은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이다.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의 정부 조달에 관한 대통령령 1070(1994년)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렵다. 또한, 에너지 및 건설 분야 등 입찰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제한은 브라질 정부의 공식적인 외국기업 우대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동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경우 국내 인력사용을 의무화하고 경우에 따라 국산장비 및 부품의 사용도 의무화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외국 업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다만,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은,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운 외국기업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몇몇 특정 구매는 국제입찰에 부치는 등 최근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도로 및 철로 건설(보수),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투자가 시급한 산업 인프라 부문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프로젝트(PPP) 실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관련 국제입찰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 규제

환경오염방지법

브라질은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의 공업지대에서는 주(州) 및 시(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지역개발 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 규제는 약한 편이다. 2004년 12월에 통과되어 2005년 1월 공포된 법률 (11.092/05)은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개량된 종자판매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브라질은 환경부 및 CETESB(환경부 산하 환경위생기술청)가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서비스 · 투자 장벽

현지직원 고용 의무

브라질 노동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지만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노무관리의 어려움

브라질의 노동법은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운 점이 투자 시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현지직원을 1명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제,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 급여 인상 등을 고려해야 하고, 해고 시에도 퇴직별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여 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의 노동법은 노동자와 약자 위주로 제정되어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비용(인지대 등)을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지만 브라질의 노동법에서는 노동자가 혹여 패소할 경우에도 노동자에게 부담이 없다.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노동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 서비스업 규제

브라질은 남미 최대 보험시장으로 동 지역 전체 수입보험료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8년 브라질 재보험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지난 70년간 이어져온 IRB(브라질 국영 재보험사)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렸으나, 현재까지 완전경쟁 시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브라질 국내 보험사 및 재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진출 장벽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 보험 산업에서는 브로커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보험사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수의 브로커가 활동하며 조직화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판매채널 다변화(Direct Marketing 도입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멕시코 등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EU) 등이다. 2014년 기준,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24위 수출대상국, 20위 수입대상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7대 수출 및 수입대상국으로서, 보다 높은 교역비중을 점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상품 수출입은 각각 49억 달러와 54억 달러에 달해, 약 5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43.9%), 휴대전화(6.4%), 자동차부품(5.5%), 타이어(1.8%), 철강(1.7%) 등이다.

1962~2014년간 누적(신고금액) 기준, 캐나다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은 총 65.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 유치금액의 2.7%를 차지한다. 2011년 이후 캐나다의 대한국 투자 주요 업종은 금융·보험(26.8%), 금속(18.7%), 부동산·임대(12.1%), 전기·전자(11.2%), 운송용 기계(5.0%) 등으로 제조업(49.2%)과 서비스업(50.7%)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연기금들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우량기업 M&A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나, 제 3국을 경유한 우회 투자로 인해 캐나다로부터의 FDI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캐나다 직접 투자는 2005년 이후 매년 1억 달러 이상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역대 최대인 41억 달러(신고금액 기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업이 대캐나다 투자의 50%~90%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 투자비중은 10% 이하에 그치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2014년 9월 타결된 후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통관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

최근 수년간 농수산물과 식료품에 대한 통관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산 과실류에 대한 통관검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젓갈 등 어류 품목에 대한 통관불허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CFIA는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양 기관 중 어느 한 곳에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될 경우 캐나다와 미국으로의 판로가 막힐 우려가 있다. 실제 2012년 5월 CFIA는 한국산 냉동굴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입불허 조치가 결정되었는데, 이는 앞서 FDA가 해당 한국업체에게 적용한 수입불허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캐나다 인증취득 제도

캐나다는 기계, 전자 등 공산품을 비롯하여 부품, 소재 등에 광범위하게 표준인증(CSA)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도 통용되기는 하지만, 대다수 상품에 CS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SA 인증은 민간기관(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이 발급하는 민간자율제도에 해당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에너지, 전자전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CSA 인증 취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CSA 인증의 약 40%가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 법률에 의해 채택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유통 규정 관련 제한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 전반에 대한 수입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규정(Food and Drugs Regulations)'이 적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공식품규정(Processed Products Regulations)'을 준수해야 한다.

캐나다로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명, 성분, 무게, 원산지, 유통기한 등을 표기(Labelling)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인공색소 등의 포함 여부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소스, 장류 등 상대적으로 많은 원료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식품의 특성상, 특수 성분 표기 누락에 따른 수입금지 등 규제발생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캐나다는 1992년 제정한 에너지효율법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대상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기준에 따른 MEPS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의류건조기, 의류세탁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온수기, 형광등 등을 포함하여 총 154개 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수입식품의 HACCP 인증 의무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은 식품 안전 강화 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을 제정하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HACCP은 식품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 및 권고되는 수단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캐나다는 육류, 가금류 및 어류에 대해서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HACCP 인증이 없는 업체와의 상담은 무의미하다고 바이어들이 전할 정도로 HACCP 인증이 캐나다 시장진출에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 날로 식품 안전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앞으로 식품 교역에서의 HACCP 적용 요구는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까다로운 식품 라벨링 및 수입기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개 언어로 라벨링 표기를 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포장 단위인 Inner Box에는 성분표(Ingredients)와 영양분석표(Nutrition Facts Table)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성분표는 해당 제품에 들어간 재료 중 많이 포함된 순서대로 영어와 불어로 적되, 알레르기 유발 기능성분(Egg, Milk, Mustard, Peanuts, Seafood, Sesame, Soy, Sulphites, Tree Nuts, Wheat 등)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리콜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 종류별로 허용되는 첨가제가 다르고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등은 캐나다에서 금지되는 등 첨가제 기준이 국내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CFIA 홈페이지 (www.inspection.gc.ca)



에서 캐나다 식품수입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산 육류나 유제품, 달걀 등의 수입은 불가능하는 등 식품 종류에 따라 수입 불가 품목이 있으며, 수입이 가능하더라도 식품 별로 수입통관 절차가 다를 수 있는 등 수출 절차가 복잡하고 검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식품 수출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구제 조치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경관리청(CBSA)이 반덤핑 제소에 대한 덤핑 조사를 담당하고,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산업피해 조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반덤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반덤핑 조사 및 판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반덤핑 제소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수출물량이 관세 산출에 부족할 정도로 미미할 경우, 제3국 다른 업체의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는 WTO 반덤핑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덤핑과 보조금으로 인한 자국업체의 피해를 합산(cross-cumulating)하고 있는데, WTO 협정은 덤핑 피해 산정 시 다른 요소는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조치

2015년 현재 캐나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는 총 8건으로, 7건은 시행 중이고 1건은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철강 및 금속 제품에 대한 규제가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 유압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2015년 1월 캐나다 국경 관리청(CBSA)은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해 13.3%~41%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3월에는 한국산을 비롯하여 9개국에서 수입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서도 덤핑 판정을 내리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2015년 9월 한국산 등 동제 관연결구에 대한 반덤핑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동제 관연결구 재조사는 일부 피제조 기업들의 캐나다 기업 피해가 과장되었다는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업의 증빙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여 2016년 2월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덤핑 수입규제 강화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는 캐나다 산업 구조 상, 향후 반덤핑 조치를 통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소비와 기업투자가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지출도 제한적이므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가 캐나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에 따라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압식 변압기 사례와 같이 절삭 공구, 강관 등 산업장비 등의 품목이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5 외국의 통상환경

- 무역장벽 보고서 -

◆ 인 쇄 | 2015년 12월

◆ 발 행 | 2015년 12월

◆ 발행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인쇄처 | (주)나모기획 (044-998-6998)

2015 외국의 통상환경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Trade Environment 2015

무역장벽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